

## ▶ 발간사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우리 區發展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속에 출범한 제3대 西  
大門區議會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地方自治 發  
展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努力으로 어느덧 뜻  
깊은 開院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西大門區議會는 언제나 구민생활 깊숙한 곳에서 구민여러분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區民의 뜻에 따라 區政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西大門區議會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區行政  
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또한 현장 活動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生產  
的이고 模範的인 議會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이란 세월이 地方自治를 성숙시켜온 시기 였다면, 이제부  
터는 이러한 자치 기반을 바탕으로 진정한 地方自治가 實現될 수 있도  
록 다같이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議會가 지난 한해동안 活動해 온 議政活動을 정리하여 現  
在와 未來의 올바른 指標로 삼고, 앞으로의 議政發展 方向을 제시하고  
자 冊子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나마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난날을 보듬는 발자취로, 앞을  
보는 꿈으로, 가치 있는 資料로써 活用되기를 바라면서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西大門區議會 議長 吳 煥 仁



西大門區議會 議政紙 發刊을 40만 區民과 함께 祝賀하는 바입니다.

歷史는 記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記錄된 歷史는 後世에 教訓이 될 때에 참된 價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西大門區議會 議政紙가 西大門區 歷史에 길이 보전되어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地方自治時代에 區廳과 議會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논리인 견제나 균형이 아니라 相互補完과 協力이 바탕이 되어 地域의 發展과 주민 福利增進에 目標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命題에서 볼 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한해 동안 구정의 여러 부문에서 전폭적인 聲援을 보내 주셔서 우리 西大門區가 全國에서 가장 成功한 自治團體로 發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議會와 區廳이 合心 努力해서 西大門區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01년 西大門議政紙의 發刊을 祝賀드리며 地方議會史에 길이 남는 議政紙가 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2001년 12월

西大門區廳長 李政奎

#### → 제 3 대 2기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

議長聞



議長 吳煥仁



副議長 金鍾喆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鎮壽



行政管理委員會  
委員長 崔光振



福社建設委員會  
委員長 許俊九

相炯章淵烈馥完出  
圭華聖蕙漢文容日  
劉金全鄭韓李崔鄭  
事員員員員員員員  
幹委委委委委委委

烈相奉喆炫淵中壽求  
漢圭基鍾廷蕙泰鎮在  
韓劉李金金鄭崔李趙  
事員員員員員員員員  
幹委委委委委委委委

炯杓章峰馥一完出根  
華昌聖大文永容日有  
金奇全金李金崔鄭禹  
事員員員員員員員  
幹委委委委委委委

## 제 3 대 2기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 ←



議長 吳煥仁



副議長 金鍾喆

## 當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鎮壽



行政管理委員會  
委員長 李基奉



福社建設委員會  
委員長 許俊九

相炯章淵烈馥完出  
圭華聖蕙漢文容日  
劉金全鄭韓李崔鄭  
事員員員員員員員  
幹委委委委委委委

烈相振皓炫淵中壽求  
漢圭光鍾廷蕙泰鎮在  
韓劉崔金金鄭崔李趙  
事員員員員員員員幹委委委委委委委委

炯杓章峰馥一完出根  
華昌聖大文永容日有  
金奇全金李金崔鄭禹  
事員員員員員員員員  
幹委委委委委委委委

# 제3대

## 2기 의회 의원 소개

### 오환인 의원

북가좌 제1동



생년월일

1950. 6. 2

직 위 의 장

주 소 북가좌1동 421-23

전 화 사)376-3000 자)303-7986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임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 새마을지도자 북가좌1동 협의회장 역임
- 생활체육 북가좌축구협의회 회장역임
- 대한목욕업 서대문지회 회장
- 서부경찰서 북가좌1파출소 방법위원장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선도위원회 부회장
- 서대문구의회 제2대2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3지회 회장
- 우주아트건설 대표이사

### 김종철 의원

창 천 동



생년월일

1940. 1. 31

직 위 부 의 장

주 소 창천동 20-51

전 화 사)392-4500 자)325-6630

-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도시정책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수료
- 통일주체국민회의 2대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서대문협의회 부회장
- 국제 민간외교협의회(P.T.P)서울시협의회 간사장
- 서대문구의회 제2대1기 총무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제2대2기 징계자격 및 제3대1기 예결특위 위원장
- (주)신영목재교역 대표

## 이진수 의원

홍제 제4동



생년월일 1934. 3. 29      직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소 홍은동 190-15      전화 사)735-9981~ 자)3216-5293  
H.P : 011-553-5293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농과대학 중앙농민학교 졸업
- 종로구청근무
- 은평구청 근무
- 서대문구청 근무
- 서대문구 홍제4동장 근무
- 서대문구의회 제2대2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 이기봉 의원

북아현 제1동



생년월일 1949. 7. 10      소속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소 북아현1동 509      전화 사)393-0030 자)362-0030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북아현1.3동 새마을금고 이사(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간사
- 서대문구의회 상임, 특별위원회 간사(5회)
- 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대표 위원
- (주)한일석유 대표이사

## 어준구 의원

북가좌 제2동



생년월일 1934. 2. 10      직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소 북가좌2동3-143      전화 사)374-1858 자)374-1858

- 안성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 진천군 건설국 관리과, 백곡면 근무
- 충남 천원군 성환면, 직산면, 입장면 근무
- 서대문구 남가좌1·2동 근무
- 마포구 상암동, 공덕동 근무
- 서대문구 청소과, 사회복지과 근무
- 서대문구 홍제2동, 홍은2동, 북가좌1,2동장 역임
-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 유규상 의원

충정로동



생년월일 1938. 7. 16  
주 소 충정로2가 185-15  
현대(△) 706

직 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 화 사) 363-3141 자) 363-4622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해병대군악대 동우회장
- 서울미동초등학교 육성회장
-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 충정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충정로동 현대(△) 재건축조합장
- 민주평화동일자문화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
- 독립문 새마을금고 이사장
- 서대문구 새마을금고 연합회 부회장
- 서대문 산악회장
- 서대문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 한한열 의원

연희제3동



생년월일 1943. 1. 21  
주 소 연희3동 304-2

직 위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전 화 사) 336-0028 자) 396-0336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육군소위 임관(ROTC제3기)
- 중구청, 성동구 수도사업소 근무
- 성동구청, 서대문구청, 서울시청감사담당관실 근무
- 서부건설사업소 근무
- 서대문구청 예비군중대장(4년)
- 서대문구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근무
- 서대문구 연희제3동장, 북아현제1동장, 흥제제4동장 역임
- 민주평화동일자문화의 서대문구협의회 제2지회장
-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희지역대장
- '9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화영 의원

북아현 제2동



생년월일 1952. 6. 18  
주 소 북아현2동 290-43  
501호

직 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 화 사) 313-3332 자) 392-9424

- 서울마포초등학교 졸업
- 선인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 전체수석졸업(무도과)
- 죽룡체육관(태권도)관장
- 태권도 공인 7단 · 2급 경기지도자
- 연청 서대문갑 지구회장
- 북아현동 새마을금고 이사
- 1999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 U.S.A 우주태권도 연합회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 2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 서울마포중학교 졸업

## 기창표 의원

천연동



생년월일 1951. 4. 17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소 옥천동 19      전화 사)364-5901 자)312-5345

- 육군3사관학교 졸업/소위입관/육군예비역 소령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경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 고려·경기·국제·감리교신학대학교 교관역임
- 천연동 예비군 동대장 역임
- 민주당 서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 새정치국민회의 서대문(갑)지구당 사무국장 역임
-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복지국장 역임
- 서대문구의회 제2대 2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대문구의회 제3대 1기 부의장 및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위원

## 전성장 의원

북아현 제3동



생년월일 1933. 3. 24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주소 북아현3동 1-1027      전화 사)363-4606 자)365-0627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수료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지역사회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수료
- 새마을지도자·한전사원·연수원 새마을금고 연합 연수원 강사
- 서대문구의회 초대·2대·3대 임시의장
-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조사(도시가스)특위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한노인회 서대문구 지회장
- 관내산 환경보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대봉 의원

대신동



생년월일 1954. 5. 11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소 대신동 56-40      전화 사)362-8989 자)392-5797

- 창천초등학교
- 광운전자고등학교
- 대현동 청소년 선도위원
- 경우회 서대문 자문위원
- 대현동 자율방범위원회 위원장
- 국민회의 대신동 부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 1기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 2000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세외수입관리실태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현 의원

연희제1동



생년월일 1939. 7. 1 소속 행정관리위원회  
주소 연희1동 542-45 전화 사)364-5900 자)324-5755

- 연세대학교 산업대 공업경영학 수료
  - 시립대 정책고위과정 수료
  - 연희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 연희1동 정화추진위원장 역임
  - 서대문구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역임
  - 서대문구의회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장
  - 서대문구청 토지평가위원(현)
  - 한국상사 대표(현)
  -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부의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의장

정예연 의원

연희제2동



생년월일 1935. 5. 5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주소 연희2동 196-1      전화 사)336-2816    자)334-0421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과정)수료
  - 서울라이온스 외국인 면세아케이트 대표
  - 범민족 '88서울올림픽 서대문구협의회 운영위원
  - 연희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현)
  - 새마을금고 연합회 서대문구협의회 부회장
  - 연희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간사(현)
  - 서대문구의회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 서대문구의회 '99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2000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세외수입관리실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

홍제제1동



- 광성고등학교 졸업
  - 보안자문위원회 고문
  - 민족통일위원회 위원
  - 법무부 서부갱생 보호위원
  - 경일주택 대표이사
  - 서대문구의회 제3대 1기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 '99 예산결산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99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200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 새마을금고이사(현)
  - 방위협의회 위원
  -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 지도자

## 이문복 의원

홍제 제2동



생년월일 1948. 5. 9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소 홍제2동82      전화 사)737-2329 자)737-7350  
한양⑧109-102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관리 43기 수료(2년)
- 동양방송국 T.V제작지원국 실장
- 수정공업사 대표
- 민주정의당 7지구당(서대문·은평)청년분과 위원장
- 민주자유당 서대문구 갑지구당 부위원장 및 청년분과 위원장
- 서대문구청 건축심의 및 자문위원
- 서대문경찰서 자율방범협의회 간사
- 수정전자 산업(주)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부간사
- 중국산동성 문등시 경제고문
- 2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영일 의원

홍제 제3동



생년월일 1950. 10. 20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소 홍제3동 260-43      전화 사)396-0101 자)391-2050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연세대학교 지방의회발전과정 수료
- 한양대 지방자치발전과정 수료
- 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부위원장
- 인왕초등학교 교육 자문위원
- 서대문구청 보건·토지평가 심의위원
- 서대문구의회 제2대1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 천주교 홍제동 교회 사목위원
- 15대 대선행정발전특별 위원장
- 성모어린이집 이사장
- 서대문구의회 1대, 2대, 3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1,2,3대 감사)

## 최용완 의원

홍은 제1동



생년월일 1948. 1. 22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주소 홍은1동453-2      전화 사)394-0524~5 자)3216-6562  
풍림2차⑧102-1203

- 건국대학교 법경대학상학과 졸업
- ROTC 제7기소위임관, 예비군중대장(15년)
- 한나라당서대문구 을지구당사무국장, 부위원장
- 서대문구의회(제1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서대문구 사회교육원 교수부장(현)
- 한국노인행복찾기 운동본부 고문(현)
- 국제라이온스 서부지구 이사(현)
- 홍삼환경주식회사 회장(현)
- 조한건설(주) 사업본부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출무위원회위원장

## 최광진 의원

홍은 제2동



생년월일 1946. 6. 13      직위 행정관리위원회  
주소 홍은2동 10-27      전화 사)396-3191 자)379-0405

- 연세대 사회교육원 고위자 과정수료
- 연세대교육대학원 고위자 과정 수료
- 홍은2동 방위협의회 회장
- 홍은2동 청소년 선도위원      • 홍은2동 새마을금고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
- 서대문구의회 제2대2기행정사무(주택재개발)조사특위 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서대문구 을지구당 부위원장
- '99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 2기 전반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 조재구 의원

홍은 제3동



생년월일 1939. 11. 29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주소 홍은3동 338-5      전화 사)304-4537 자)304-4576

-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위원
- 불우청소년돕기 자비장학회 회장      • (재)아-태평화 재단 위원
- (사)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서부지구 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위민봉사위원회 감사
- 청소년지도육성회 홍은3동 회장
- 서대문구의회 제2대1기 부의장
- 서대문구의회 제2대2기 윤리특위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2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일출 의원

남가좌 제1동



생년월일 1941. 7. 23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소 남가좌1동 152-39      전화 사)373-1786 자)306-3370

-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미정부(국무성)초청 캔스스대학 수료
- 독일정부 나우만 재단선발 지방자치 연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부회장
-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 노동특별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정책위원      • 경실련 시민위원
- 서대문구의회 제1,2,3대 의원
- 200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대문구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유근 의원

남가좌 제2동



- 생년월일** 1959. 5. 13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주 소** 남가좌2동 376-3      **전 와** 사)372-0810 자)309-4427  
현대⑧110-1206
- 경기안성안법고졸
  - 통일국민당서대문(을)사무국장
  - 사단법인한국웅변인협회 사무총장
  - 한국자유총연맹서대문구 부지회장
  - 한나라당 서대문구(을) 부위원장
  - 서대문구 교통유발 부답금경감심의 위원
  -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기금운용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제3지회 간사
  - 2000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 관내산 환경보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 관인 현대학원장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웅변예지위원장
  -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본회의





▶ 본회의장 (개회식)



▶ 본회의 (회의장면)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상임위원회 회의 (의회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관리위원회)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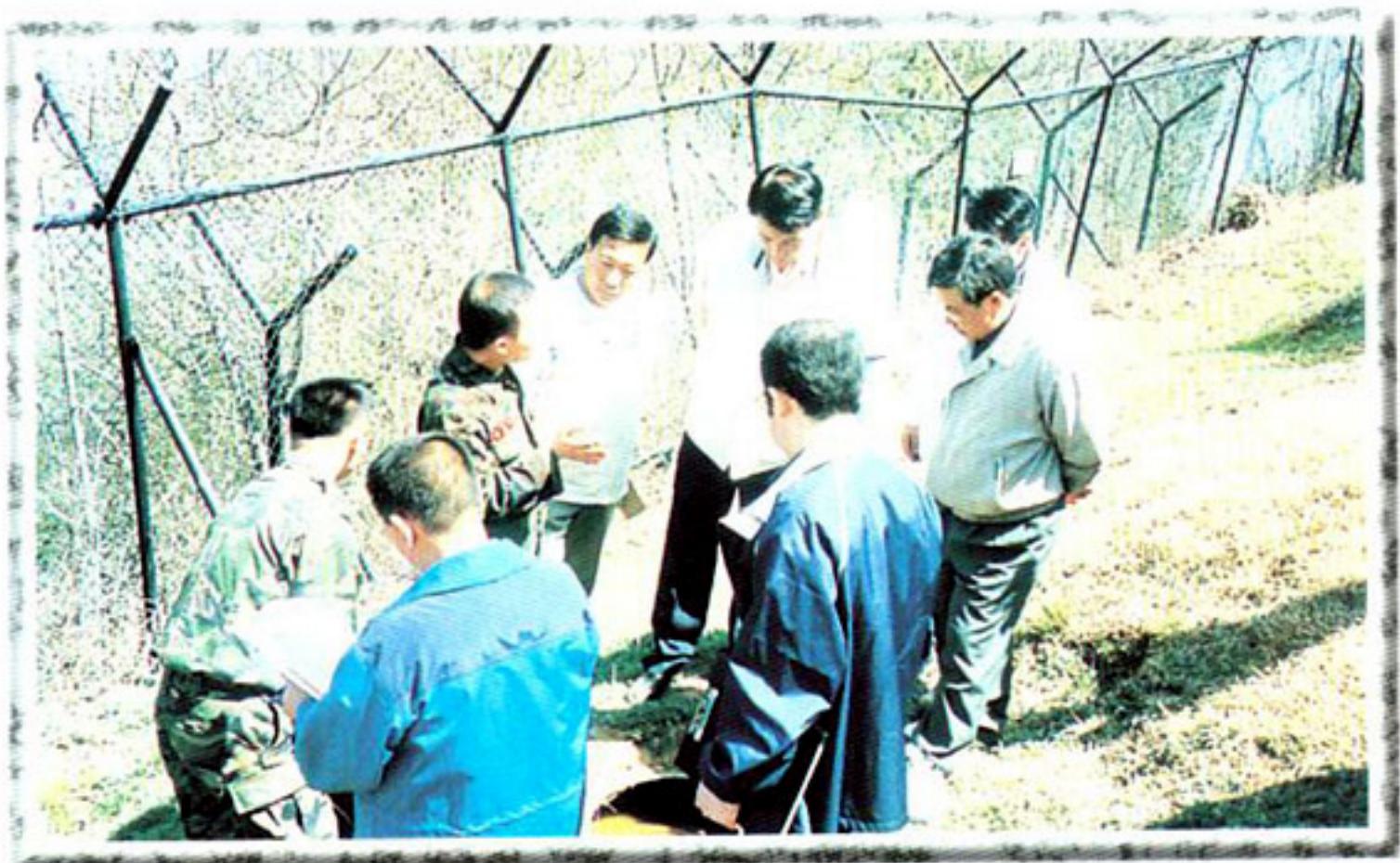


▶ 상임위원회 회의 (복지건설위원회)





▶ 관내산 환경보존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장면)



▶ 관내산 환경보존 대책특별위원회 (현장점검활동)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관내산 환경보존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중 (인왕산 진입로 입구)



▶ 관내산 환경보존 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중 이동모습)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장면)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공사장 현장확인)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불량옹벽현황청취)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봉원동 위험 건축물 현장확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면



▶ 세외수입관리실태 특별위원회 회의장면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구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



▶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구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구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 당진군의회 비교시찰 방문 (2000. 11. 23 ~ 11. 25)



▶ 신안군의회 비교시찰 방문 (2001. 4. 11 ~ 4. 14)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보성군의회 비교시찰 방문 (2001. 4. 11 ~ 4. 14)



▶ 인천국제공항방문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2000. 11. 6 ~ 12. 23)



▶ 의원 정보화 특별교육

사진으로 본

## 의정화보



▶ 2000년 서대문구의회 송년의 밤 행사 (2000. 12. 28)



▶ 2001년 전·현직 구의원 신년인사회 행사



▶ 불우이웃돕기활동 (관내 애란원 위문)



▶ 초등학교 어린이 의회방문 (관내 연가초등학교)

# 목 차

## 제 1 장 연혁 및 현황

I . 구 연혁 및 현황 .....	43
1. 서대문구 연혁 .....	43
2. 서대문구의 지역특성 .....	44
3. 구정현황 .....	45
II . 행정여건 .....	48
1. 행정조직 및 인력 .....	48
2. 재정규모 .....	51
III . 의회연혁 및 현황 .....	53
1. 지방의회의 연혁 .....	53
2. 서대문구 의회연혁 .....	54
3. 의회의 기능 .....	55
4. 의회현황 .....	56
5. 사무국조직 및 직원현황 .....	57
6. 의회청사 현황 .....	58

## 제 2 장 의회운영

I . 본회의 운영 .....	61
1. 의의 · 집회 · 회기 .....	61
2. 구 성 .....	62
3. 현 황 .....	63

<b>II. 위원회 운영</b>	71
1. 의회운영위원회	71
2. 행정관리위원회	77
3. 복지건설위원회	122
4. 특별위원회	151
 <b>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b>	
<b>I . 구정질문</b>	221
<b>II . 행정사무 감사</b>	222
<b>2001년도 행정사무감사</b>	
1. 의회운영위원회	222
2. 행정관리위원회	223
3. 복지건설위원회	226
<b>III . 민원처리</b>	228
1. 청원	228
2. 진정	228
3. 처리 현황	228
<b>IV . 기타의정활동</b>	229

## 제 4 장 부 록

I . 역대 시 · 구의원 명단 .....	233
II . 직능 · 유관단체 현황 .....	237
III .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 .....	241
1. 서대문구의회 · 구청 .....	241
2. 서울시 민원전화 .....	247
3. 서울시 각구청 · 구의회 .....	248
4. 타구의회 .....	249
5. 서울특별시 의회 .....	250
6. 기타 유관기관 .....	251

## 제 1 장 연혁 및 현황

I. 구 연혁 및 현황

II. 행정여건

III. 의회연혁 및 현황



# 제 1 장 연혁 및 현황

## I. 구연혁 및 현황

### 1. 서대문구 연혁

서대문 지역은 멀리 석기시대로부터 씨족끼리 취락을 이루며 농경과 수렵·어로활동 등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온 곳으로, 당시 유물로 신촌에서 흑요석과 옥수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B.C 18년에 백제의 땅이었으나, A.C 475년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함에 따라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A.D 553년에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양군으로, 고구려시대에는 12목의 하나인 양주로 개칭되었으며, 문종 21년(A.D 1087년)에는 3소경제도를 채택하여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태조는 한양을 한성부로 개칭하고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대문구는 서부에 속하여 반송방, 반석방, 상평방, 연희방, 영은방의 일부 지역으로 중국과의 교류시 진입로 역할을 하였다.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되면서 지금의 서대문구는 한성부와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분리 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역소가 경성부 내에 설치되었으며, 1945년 10월 6일 서대문구역소를 서대문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 8월 15일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그해 9월 18일 서울시가 경기도에 관할에서 분리되었고,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1946년 10월 일본식 동명 변경에 따라 정(町)을 동(洞)으로, 정목(丁目)을 가(街)로 통(通)을 로(路)로 고쳤으며,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전부를 서대문구로 편입하여 은평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대신동을 신설하고, 1964년 6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의 노고산동과 대현동 일부지역이 마포구로 편입되고, 마포구의 아현동 일부지역을 서대문구로 편입하였으며 1964년 10월 29일 안산, 녹번, 대광, 홍은동을 각각 1.2동으로 분리하여 행정구역 동수가 53개동이었다.

1973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대문구에 포함되어 진관동을 신설하였고, 마포구의 동교동, 서교동 일부가 서대문구에 편입되고, 서대문구의 성산동, 연희동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었다.

1975년 10월 구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 관할에 전례없는 변동이 일어났다. 즉 서대문구 관할의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흥지동, 신영동, 행촌동, 송월동, 홍파동, 평동과 교남동, 교북동, 현저동, 충정로1가의 각 일부를 종로구에 넘겨 주었으며,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2가, 중림동과 의주로1가, 충정로1가, 합동, 충정로3가, 만리동 1,2가의 각 일부를 중구에 넘겨 주었으며, 상암동, 성산동과 수색동, 중동, 남가좌동, 연희동 각 일부를 마포구로 넘겨 주었고 만리동 1,2가 일부를 용산구에 넘겨 주었으며, 마포구의 동교동 일부를 서대문구에 편입하였다.

1979년 10월 1일 은평구청 신설로 그동안 은평출장소 관내의 녹번동, 불광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수색동의 13개동이 서대문구 관할에서 제외되고 은평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80년에는 홍은4동을 폐지하였고, 1983년에 홍제1동 일부를 홍제2동으로 편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3동으로, 북아현3동 일부를 충정로3가에 편입하고 1998년 10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저동이 천연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서대문구는 면적  $17.6\text{km}^2$ 에 21개동을 관할하면서 구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 4일 자방선거를 실시하여 민선 제2기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2. 서대문구 지역특성

서대문구는 종로구 만세문 바깥 도로원표로부터 3~5km 지점에 위치하여 구의 동쪽은 종로구와 중구에 접하여 있고, 남쪽은 마포구, 서쪽은 은평구와 마포구 일부지역, 북쪽은 은평구에 접하고 있으며, 동경  $126^{\circ} 54' 45'' \sim 126^{\circ} 58' 06''$  와 북위  $37^{\circ} 33' 23'' \sim 37^{\circ} 36' 58''$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평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안산 등 5개산을 중심으로 임야, 분지, 구릉지로 되어 있으며, 안산(295m, 270ha)을 중심으로 충정로, 신촌, 북아현, 연희지역의 일부가, 인왕산(338m, 108ha) 북서쪽에 홍제지역이, 백련산(224m, 81ha)을 중심으로 홍은지역이, 연희동 일부지역에 궁동산(104m, 13ha)이 북한산(229m, 115ha) 동남쪽 기슭에 홍

은지역이 접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찍이 전형적인 주거지역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및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이 8개교, 초·중·고등학교가 40개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생활권이 다핵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하고 있어 신촌지역은 외곽 기능 역할증대에 따라 부도심권으로 성장, 상권형성 및 문화의 거리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모래내지역은 농산물 직거래 시장으로, 북아현지역은 가구 및 드레스 전문상가로, 남·북가좌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3. 구정현황

#### 가. 일반현황

##### 1) 지리적 여건

###### 가) 위치

구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정		연장거리
		지명	극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6	동단	서대문구 미근동 315-5	북위 37° 33' 33" 012 동경 126° 58' 08" 022	동서간 6.154km
	서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54-1	북위 37° 34' 23" 761 동경 126° 54' 04" 616	
	남단	서대문구 창천동 30-16	북위 37° 33' 08" 408 동경 126° 56' 09" 822	남북간 6.275km
	북단	서대문구 홍은동 산 1-70	북위 37° 36' 28" 동경 126° 56' 58" 225	

###### 나) 면적 - 17.6km<sup>2</sup>(시의 2.9%)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15.62km <sup>2</sup> (88.8%)	0.25km <sup>2</sup> (1.4%)	1.73km <sup>2</sup> (9.8%)

## 다) 주요시설

- 공공기관 - 84개소 (구청1, 동사무소21, 경찰청1, 파출소22, 소방파출소4, 우체국18, 기타17)
- 학 교 - 48개교 (대학8, 고등7, 중등13, 초등18, 외국인학교2)
- 의료시설 - 309개소 (종합병원2, 병의원275, 한의원72)
- 문화재 - 30개소 (국보1, 보물11, 사적6, 무형문화재3, 민속자료3, 유·무등6)
- 복지시설 - 221개소 (도서관1, 복지관3, 경로당70, 보육시설등 147)
- 도시기반시설
  - 도로연장 290km(도로률 17.6%)
  - 상수도 933.5km(보급률 100%)
  - 지하철 8.2km(2,3,5호선)
  - 도로포장 2.28km(포장률 93%)
  - 하수도 398km(보급률 100%)
  - 도시가스보급 105,000가구(보급률 81%)

## 2) 인구

## 가). 인구추이

(단위 : 명)

연도	세대	인구			인구밀도 (km <sup>2</sup> 당)	면적 (km <sup>2</sup> )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1990	103,372	387,089	194,964	192,964	21,882	17.68	3.7
1991	127,136	392,586	196,281	196,305	22,193	17.69	3.1
1992	122,844	390,140	195,000	195,140	22,054	17.69	3.18
1993	123,155	381,905	190,864	191,041	21,589	17.69	3.10
1994	123,325	374,662	187,350	187,312	21,179	17.69	3.04
1995	125,996	371,449	185,556	185,893	20,998	17.69	2.95
1996	127,125	366,134	182,525	183,609	20,803	17.69	2.88
1997	125,092	358,995	178,743	180,252	20,397	17.69	2.87
1998	128,812	366,726	182,269	184,457	20,731	17.69	2.85
1999	129,403	371,240	184,227	187,013	20,985	17.69	2.86
2000	133,799	371,863	184,467	187,396	21,021	17.69	2.78
2001	135,033	374,380	185,544	188,836	21,163	17.69	2.77

주) 1990년까지는 인구조사 결과이며,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임 (외국인 포함)

## 나) 동별인구 현황

(기준일: 2001. 6. 30)

행정구역 (동 명)	합 계			세 대	한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74,380	185,544	188,836	135,033	368,442	182,631	185,811	5,938	2,913	3,025
충정로동	8,723	4,447	4,276	3,471	8,608	4,380	4,228	115	67	48
천연동	20,150	9,936	10,214	7,428	20,004	9,867	10,137	146	69	77
북아현1동	11,266	5,506	5,760	4,403	11,221	5,483	5,738	45	23	22
북아현2동	10,596	5,113	5,483	3,966	10,560	5,103	5,457	36	10	26
북아현3동	15,390	7,652	7,738	5,505	15,300	7,600	7,700	90	52	38
대신동	9,204	4,297	4,907	4,358	8,332	3,870	4,462	872	427	445
창천동	12,596	6,209	6,387	5,564	12,123	5,972	6,151	473	237	236
연희1동	15,923	7,878	8,045	5,915	15,505	7,647	7,858	418	231	187
연희2동	12,065	5,977	6,088	4,284	11,525	5,700	5,825	540	277	263
연희3동	16,556	8,077	8,479	6,947	15,197	7,419	7,778	1,359	658	701
홍제1동	16,678	8,114	8,564	5,873	16,523	8,026	8,497	155	88	67
홍제2동	14,293	7,059	7,234	5,040	14,173	7,003	7,170	120	56	64
홍제3동	22,702	11,312	11,390	7,866	22,604	11,269	11,335	98	43	55
홍제4동	17,992	8,819	9,173	5,962	17,845	8,745	9,100	147	74	73
홍은1동	11,740	5,828	5,912	3,799	11,659	5,786	5,873	81	42	39
홍은2동	21,296	10,686	10,610	7,246	21,223	10,661	10,562	73	25	48
홍은3동	29,549	14,675	14,874	10,243	28,879	14,377	14,502	670	298	372
남가좌1동	19,303	9,696	9,607	7,260	19,214	9,651	9,563	89	45	44
남가좌2동	34,664	17,306	17,358	11,836	34,423	17,179	17,244	241	127	114
북가좌1동	20,852	10,507	10,345	7,064	20,780	10,483	10,297	72	24	48
북가좌2동	32,842	16,450	16,392	11,003	32,744	16,410	16,334	98	40	58

## II. 행정여건

### 1. 행정조직 및 인력

#### 가. 인력현황

- 기 구 : 5국 1소 1담당관 22과 21동
- 인 력 : 정원 1,197명, 현원 1,221명

(2001.6.30 기준)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전문직
계	정원	1,197	666	181	240	79	18	13
	현원	1,215	666	180	262	77	17	13
구	정원	899	450	136	216	79	10	8
	현원	877	437	133	214	75	10	8
동	정원	198	198	0	0		0	
	현원	241	211	1	29		0	
보건소	정원	73	8	45	15	0		5
	현원	70	6	46	11	2		5
구의회	정원	27	10		9		8	
	현원	27	12		8		7	

## 나. 행정구역

동명	면적(km <sup>2</sup> )	행정조직	
		동	반
21개동	17.60	560	4,456
충정로동	0.51	20	134
천연동	0.97	40	297
북아현1동	0.28	17	143
북아현2동	0.18	15	116
북아현3동	0.61	22	167
대신동	2.02	17	121
창천동	0.61	21	148
연희1동	0.90	25	194
연희2동	0.58	21	156
연희3동	1.57	21	165
홍제1동	0.64	25	187
홍제2동	0.59	23	182
홍제3동	0.81	36	267
홍제4동	1.05	24	190
홍은1동	0.37	20	129
홍은2동	1.21	33	255
홍은3동	2.06	38	337
남가좌1동	0.48	33	271
남가좌2동	0.79	41	386
북가좌1동	0.53	28	248
북가좌2동	0.84	40	363

## 다. 구·동청사 현황

(2000. 12. 31기준)

연번	구 분	주 소	대지면적 (m <sup>2</sup> )	건물면적 (m <sup>2</sup> )	건물구조	건축년도
1	구 청	연희동 168-6	5,120	9,685.09	철근, 콘스라브	'77. 5.16
2	충정로동	충정로3가 185-2	535.30	1,357.59	철근, 콘스라브	'97.11.15
3	천연동	영천동 101	663.70	882.49	철근, 콘스라브	'95. 6. 1
4	북아현 1동	북아현 129-37	590.60	415.84	세, 벽돌, 슬라브	'79. 3.28
5	북아현 2동	북아현 215-1	638.80	909.46	철근, 콘스라브	'98. 9.21
6	북아현 3동	북아현 1-90	476	637.33	철근, 콘스라브	'75.12. 5
7	대신동	대현동 142-4	484	539.94	철근, 콘스라브	'84.11. 4
8	창천동	창천동 4-62, 64	689.20	563.04	철근, 콘스라브	'85.12.14
9	연희 1동	연희 122-16,17	505.40	579.30	철근, 콘스라브	'86.12.20
10	연희 2동	연희 138-66	224	338.92	철근, 콘스라브	'75. 1.10
11	연희 3동	연희 168-6	145.92	477.53	철근, 콘스라브	'75. 5.16
12	홍제 1동	홍제 171-1, 4 173-9, 24	466	590.13	철근, 콘스라브	'87.11.13
13	홍제 2동	홍제 85-1	501	764.40	철근, 콘스라브	'93. 5. 4
14	홍제 3동	홍제 279-30	273	605.40	철근, 콘, 평	'95. 3. 1
15	홍제 4동	홍제 107-10	388.22	799.11	철근, 콘스라브	'98. 6.24
16	홍은 1동	홍은 71-626	304	562.11	철근, 콘스라브	'84. 1.11
17	홍은 2동	홍은 11-853	496	589.24	철근, 콘스라브	'80.11.18
18	홍은 3동	홍은 425-3	396.80	785.44	철근, 콘스라브	'80.10.13
19	남가좌 1동	남가좌 250-6	347	599.37	철근, 콘스라브	'86. 9.16
20	남가좌 2동	남가좌 342-7, 37	433.10	1,313.77	철근, 콘스라브	'99. 1.21
21	북가좌 1동	북가좌 421-10,11	435.05	412.39	세, 벽돌, 평스라브	'73.11.28
22	북가좌 2동	북가좌 324-13	408.06	644.92	철근, 콘스라브	'87.11.23

## 2. 재정규모

### 가. 2001년도 총괄 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01예산액	2000 예산액	증(△) 감		비 고
			증 감 액	증 감 율	
총 계	130,144	115,929	14,215	12.3 %	
일 반 회 계	113,040	102,755	10,285	10.0 %	
특 별 회 계	소 계	17,104	13,174	3,930	29.8 %
	의료보호기금	6,249	3,564	2,685	75.3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9	139	380	273.4 %
	주 차 장	10,336	9,471	865	9.1 %

### 나.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 산 액 (2001년도)	전년도 예산 (2000년도)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113,040,000	102,755,238	10,284,762	10.0 %	
지 방 세 수 입	17,577,944	17,019,102	558,842	3.3 %	
경상적 세외수입	7,542,105	7,754,043	△211,938	△2.7 %	
임시적 세외수입	19,127,964	15,932,983	3,194,981	20.1 %	
조 정 교 부 금	58,737,419	54,899,288	3,838,131	7.0 %	
국 고 보 조 금	4,414,360	2,797,593	1,616,767	57.8 %	
시 · 도 비보조금	5,640,208	4,352,229	1,287,979	29.6 %	

## 다.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율
합 계	113,040,000	100.0	102,755,238	100.0	10,284,762	10.0 %
경 상 예 산	67,587,707	59.8	64,665,950	62.9	2,921,757	4.5 %
인 건 비	34,241,783	30.3	35,065,428	34.1	△823,645	△2.3 %
경상적경비	33,345,924	29.5	29,600,522	28.8	3,745,402	12.7 %
사업 예 산	41,012,268	36.3	33,456,738	32.6	7,555,530	22.6 %
보 조 사 업	16,322,568	14.5	11,160,738	10.9	5,161,830	46.2 %
자 체 사 업	24,689,700	21.8	22,296,000	21.7	2,393,700	10.7 %
예 비 비 등	4,440,025	3.9	4,632,550	4.5	△192,525	△4.2 %
예 비 비	2,800,000	2.5	3,612,808	3.5	△812,808	△22.5 %
기 타	1,640,025	1.4	1,019,742	1.0	620,283	60.8 %

### III. 의회연혁 및 현황

#### 1. 지방의회의 연혁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전의 지방자치는 고대관제나 지방제도를 통하여 그 연원을 상기 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5부 3경 군현제나 신라의 9주 5소경 117군 283현 등과 고려시대에는 사심관제도와 상수리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중기 이후 향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말기의 을미개혁으로 생긴 향회제도가 있었으나, 일제 침략과 합병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된 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가 존재하였다. 제약적이나마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려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유향소를 발전시킨 것으로 행정기관의 일부로 설치된 향청은 민선제와 명예직제로 구성되어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갑오경장 이후 1895년 11월 향회규정과 향약별무규정을 공포하여 각 지역단위로 주민이 선출한 공선인(公選人) 등으로 구성된 향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주민이 당해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회의 구성이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한일합방이후 일제시대에 있어서 지방제도는 형식상으로 어느정도 지방자치와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의 지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재의 의회기능을 수행한 것은 도회·부회·읍회이다.

1933년 4월 1일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는데 도(道)라는 집행기관에 대응하는 의결기관으로 도회(道會)가 구성되었으며, 부제(府制)는 오늘날의 시(市)와 같은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1930년에 의결기관으로 부회(府會)를 설치하였으며, 1931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인 읍회(邑會)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의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도·읍·면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6.25』로 말미암아 지방선거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구성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이르러 비로소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1961년까지 9년간 3대에 걸친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된 바 있다.

- 제1대 : 1952~1956 (4년)
- 제2대 : 1956~1960 (4년)
- 제3대 : 1960~1961 (1년)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적으로 해산되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수난 속에서 제7차 개정헌법(1972. 12.27)에서 다시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동법 부칙 제10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를 구성 가능성은 아주 말살되었으며 지방자치의 암흑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제8차 개정헌법(1980.10.27)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이 비쳐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여·야간에 정치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도 끝내 지방의회의 부활을 보지 못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민주화의 열망속에 이룩된 제9차 개정헌법(1988.2.22일자 시행)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지방의회 구성의 유보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지방자치법이 1988. 5. 1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서대문구 의회연혁

서대문구의회는 관내 22개동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으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제2대의회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에 의거 1995년 7월 1일 구성하였으며, 제3대 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개정되어 의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관내 21개동에서 당선된 21명의 의원으로 1998년 6월 4일 동시선거에 의거 1998년 7월 1일부터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다.

### 3. 의회의 기능

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의결권

- 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구 예산안 심의·확정
- 구 결산검사 승인 등

#### 나. 행정감사권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 다. 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 회의의 개·폐와 회기 결정
- 질서유지
- 의원의 정계 및 자격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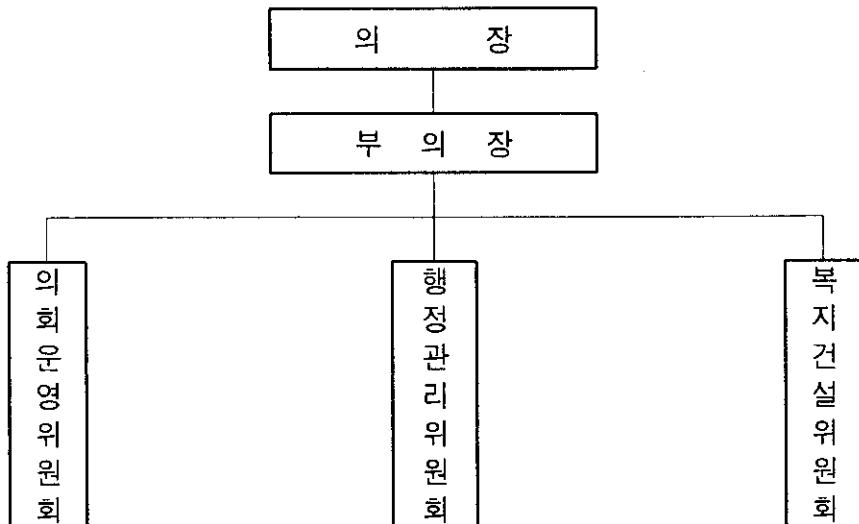
#### 라. 청원의 수리

#### 마.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요구

#### 바. 의견서, 건의안 등 제출

## 4. 의회현황

### 가. 의회조직



### 나. 구성

- 의원 : 총21명

- 의장단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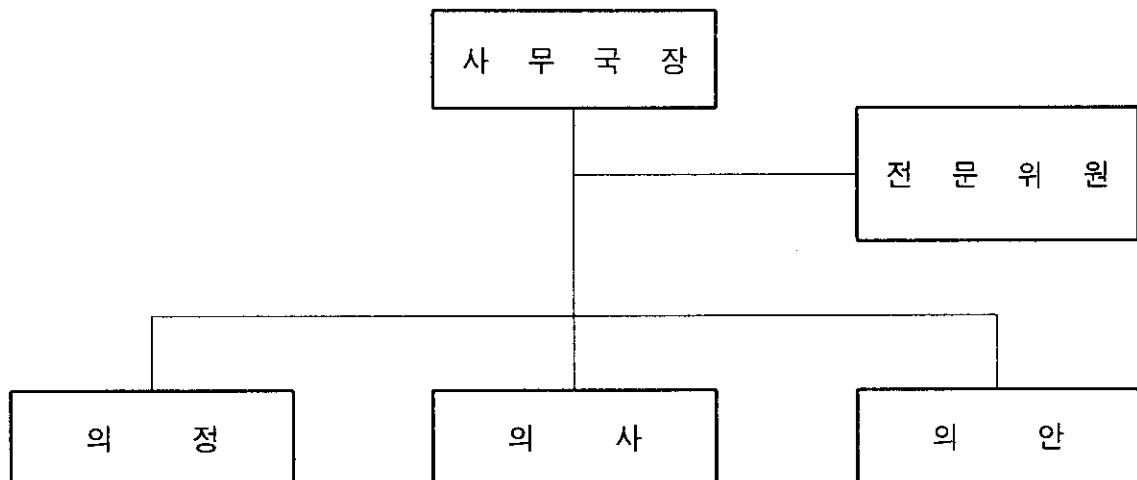
구분	직위	성명	경력	출신동	재임기간
3대2기	의장	오환인	2선	북가좌 1동	2000. 7. 8 ~ 현재
	부의장	김종철	2선	창천동	2000. 7. 8 ~ 현재

-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연번	위원회 명칭	위원수	상임위원장	소관업무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진수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li> <li>·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2	행정관리위원회	10명	최광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li> </ul>
3	복지건설위원회	10명	허준구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 5. 사무국 조직 및 직원현황

### 가. 사무국 조직



### 나. 사무국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					별정직				기능직					
		4급	6급	7급	8급	9급	5급	7급	8급	9급	운전	필기	방호	전기	기계	사역
정원	27	1	3	3	2	1	2	2	2	2	2	2	1	1	1	2
현원	27	1	3	6	2		2	2	2	1	2	1	1	1	1	2
과부족				+3		-1				-1		-1				

※ 파견 : 일반7급 1명(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6. 의회청사 현황

가. 위치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나. 면적 : 961평(지층 177평, 1층 217평, 2층 219평, 3층 203평, 4층 145평)

### 【구의회 청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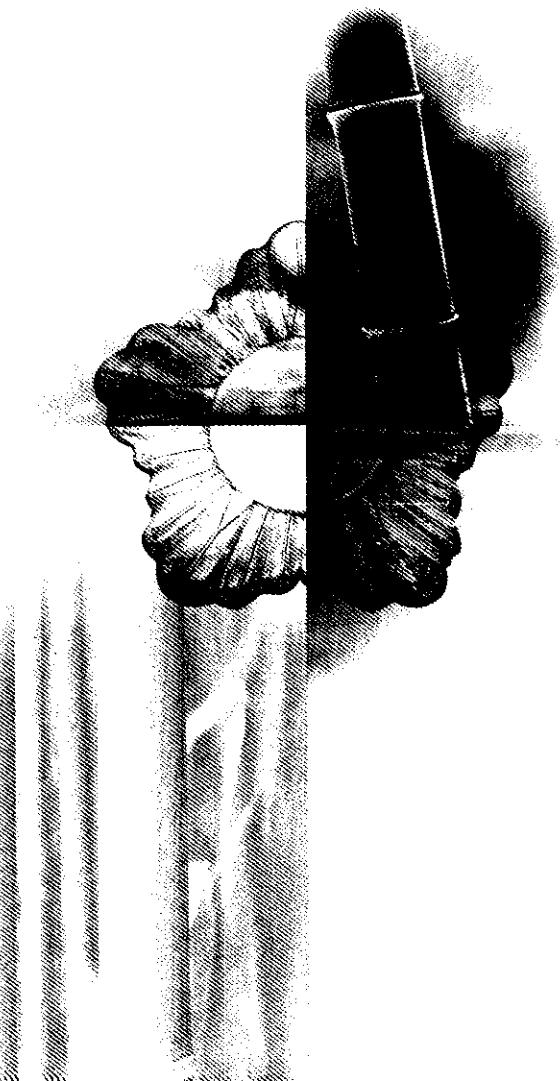
(단위 : 평)

지 층 (177평)	기계 및 전기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식당		로비 · 기타
	65	26	4	4	26	52					
1층 (217평)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회실		서 고		다용도실		숙직실		로비
	30	21	16	40	8	26	76				
2층 (219평)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운영위원회실	행정관리 위원회실	복지건설 위원회실	사무국장실		복 도	기 타	
	25	17	12	16	24	24	14	87			
3층 (203평)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의원휴게실	구간부대기실	자료실	자료열람실	복도 · 기타				
	32	32	17	13	15	17	77				
4층 (145평)	분회의장		방청석		방송실		홀		복도 · 기타		
	48	20	2	22	53						

## 제 2 장 의회 운영

I. 본회의 운영

II. 위원회 운영





## 제 2 장 의회운영

### I. 본회의 운영

#### 1. 의의 · 집회 · 회기

##### 가. 의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나. 집회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 회기기간에는 본회의와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폐회기간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의장 및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 다. 회 기

-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례회 년 2회(6월 21일, 12월 1일) 매년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기는 정례회의 경우 시·도의회는 40일, 시·군·구의회는 3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도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구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2. 구 성

제3대 1기 의회가 1998년 7월 1일 구성되어 2000년 7월 7일 만료되었고 제3대 2기 의회는 2000년 7월 8일 구성되었으며 의장단 및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分		의 장 단		의 원	비 고
반기별	기 간	의 장	부의장		
제3대 1기	1999. 7. 1 ~ 2000. 7. 7	김정현 의 원	기창표 의 원	유규상 이기봉 김화형 전성장 김대봉 김종철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최용완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허준구 우유근 의원	총 21명
제3대 2기	2000. 7. 8 ~ 현재	오환인 의 원	김종철 의 원	유규상 기창표 이기봉 김화형 전성장 김대봉 김정현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최용완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허준구 우유근 의원	총 21명

### 3. 현황

#### 가. 안건처리 현황

연 번	구분	회의 일수	계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요구안)	기타 안건
				소계	제정	개정	폐지	부결 (철회)						
	계	83	80	47	5	39	1	2	3	2	2	4	3	19
1	제78회 임시회	10	6	2		2			1	1				2
2	제79회 임시회	7	13	9	1	6	1	1						4
3	제80회 임시회	8	13	8	1	7					1			4
4	제81회 정기회	16	20	13		13			2			3	1	1
5	제82회 임시회	8	4	1	1							1		2
6	제83회 임시회	7	5	4	1	2		1					1	
7	제84회 임시회	7	9	6		6								3
8	제85회 1차 정례회	20	10	4	1	3					2		1	3

#### 나. 집회현황

회기별	집회공고일	개회일	폐회일
제78회 임시회	2000. 7. 13	2000. 7. 19	2000. 7. 28
제79회 임시회	2000. 10. 11	2000. 10. 25	2000. 10. 31
제80회 임시회	2000. 11. 7	2000. 11. 14	2000. 11. 21
제81회 제2차 정례회	2000. 11. 23	2000. 12. 1	2000. 12. 16
제82회 임시회	2001. 2. 15	2001. 2. 21	2001. 2. 28
제83회 임시회	2001. 3. 21	2001. 3. 28	2001. 4. 3
제84회 임시회	2001. 5. 7	2001. 5. 17	2001. 5. 23
제85회 제1차 정례회	2001. 6. 12	2001. 6. 21	2001. 7. 10

## 다. 회기별 집회요구 현황

회기별	집회공고일	집회 요구자	집회 요구 이유
제78회 임시회	2000. 7. 13	김종철 의원 외 9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5건
제79회 임시회	2000. 10. 11	유규상 의원외 6인	9건 안건심사·의결
제80회 임시회	2000. 11. 6	유규상 의원외 7인	13건 안건심사·의결
제81회 제2차 정례회	2000. 11. 23	의회정례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의규정	2001년도 예산안외 13건 심사·의결
제82회 임시회	2001. 2. 15	유규상 의원외 7인	재해대책구성결의안 및 안건3건 심사·의결
제83회 임시회	2001. 3. 21	유규상 의원외 6인	· 안건4건 및 의원 청가 심사처리 · 구정질문
제84회 임시회	2001. 5. 7	정일출 의원외 6인	6건안건 및 청원심사처리
제85회 제1차 정례회	2001. 6. 21	의회정례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규정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구정질문

## 라. 의회운영 현황

### ○ 본회의

(2000. 7 ~ 2001. 6)

개회회수			개회일수		
계	정기(정례)회	임시회	계	정기회	임시회
8회	2회	6회	83일	36일	47일

### ○ 상임위원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비고
95차	15차	42차	38차	

### ○ 특별위원회

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관내산특위	세외수입특위	비고
43차	10차	8차	12차	13차	

## 마.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내용 (제78회 ~ 제85회)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8회 임시회	2000. 7. 19 ~ 2000. 7. 28 (10일간)	제1차 7. 19 (수)	1. 제78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행정관리국장 원안가결 "
		제2차 7. 28 (금)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 청취안 3.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6.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79회 임시회	2000. 10. 25 ~ 2000. 10. 31 (7일간)	제1차 10. 25 (수)	1. 제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원의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제79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정일출 우유근
		제2차 10. 31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80회 임시회	2000. 11. 14 ~ 2000. 11. 21 (8일간)	제1차 11. 14 (화)  제2차 11. 21 (화)	1. 제8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제8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증 개정조례안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증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각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증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허준구 유규상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의견  찬성의견  원안가결
제81회 제2차 정례회	2000. 12. 1 ~ 2000. 12. 16 (16일간)	제1차 12. 1 (금)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원안가결  행정관리국장 “ 유규상외5명 원안가결 행정관리국장 외 2명 기창표 이기봉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81회 제2차 정례회	2000. 12. 1 ~ 2000. 12. 16 (16일간)	제2차 12. 6 (수)	1. 구정에 관한질문 (유규상, 이기봉, 김화형, 기창표, 최용완)	
		제3차 12.7 (목)	1. 구정에 관한질문 (전성장, 이진수, 한한열, 정일출, 정혜연) 2.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대문구 세외수입 관리 실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안산 외 3개소 환경 보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차 12.13 (월)	1.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2001년도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 운용 상황의 공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 관사 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조례 중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감면 조례 중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중개 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 계획(주택 재개발 구역지 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17. 윤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 의견 18. 세외수입 관리 실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 의견 19. 서대문구 관내 산환경 보존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 의견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82회 임시회	2001. 2. 21 ~ 2001. 2. 28 (8일간)	제1차 2. 21 (수)	1. 제8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의견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8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김화형 전성장
		제2차 2. 28 (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 보호조례안 2.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5.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원안가결 찬성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83회 임시회	2001. 3. 28 ~ 2001. 4. 3 (7일간)	제1차 3. 28 (수)	1.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의견 2. 전성장의원청탁거부의견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견 5.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한한열외5인 한한열외2인 김대봉 김종철
		제2차 3. 29 (목)	1. 구정에관한질문 (이기봉, 한한열, 이진수, 김화형, 김대봉, 기창표, 우유근, 정일출)	
		제3차 3. 30 (금)	1. 구정에관한질문 (이진수, 최광진, 정일출)	
		제4차 3. 31 (토)	1. 구정에관한질문 (기창표)	
		제5차 4. 3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 한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4회 임시회	2001. 5. 17 ~ 2001. 5. 23 (7일간)	제1차 5. 17 (목)	1.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 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김정현 정혜연
		제2차 5. 23 (목)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 관한의견청취안 10.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1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85회 제1차 정례회	2001. 6. 21 ~ 2001. 7. 10 (20일간)	제1차 6. 21 (목)	1.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우유근외5인 유규상외6인 한한열 최태중
		제2차 7. 5 (목)	1. 구정에관한질문 (한한열, 이기봉, 조재구, 김화령, 김대봉, 기창표, 정일출)	
		제3차 7. 6 (금)	1. 구정에관한질문 (전성장, 조재구, 정혜연, 김화령, 김대봉, 정일출, 기창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결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85회 제1차 정례회	2001. 6. 21 ~ 2001. 7. 10 (20일간)	제4차 7. 10 (화)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 II. 위원회 운영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 영 기 간	위 원 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2기	2000. 7. 8 ~ 2001. 7.10	이진수 의 원	유규상 의 원	김화형 전성장 정혜연 한한열 이문복 최용완 정일출 의원	총 9명

#### 나. 안건처리 현황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8회 임시회중(2000. 7. 19) 최초 개의하여 제85회 제1차 정례회 까지 개정조례안심사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후반기 전기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등 의회운영전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계	조 레 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 원	기 타
	개정	제정							
7	2			1			3		1

##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8회 임시회	제1차 (2000. 7. 19)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선임 : 유규상 의원	
	제2차 (2000. 7. 22)	1.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견 2.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2000. 8.2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 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4차 (2000.10.11)	1. 제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0.10.25 ~ 10.31 (7일간)	원안가결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2000.11. 4)	1. 제8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0.11.14 ~ 11.21 (8일간)	원안가결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2000.11.27)	1.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0.12. 1 ~ 12.16 (16일간)	수정안가결
제8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2000.12.11)	1. 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고자 : 배순태 2. 200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예산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81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2000.2.15)	1. 제8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1.2.21 ~ 2. 28(8일간)	원안가결

제 2 장 의회운영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2회 임시회	제1차 (2001. 2.26)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고자 : 배순태 사무국장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2001. 3.21)	1.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0. 3.28 ~ 4. 3 (7일간)	원안가결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2001. 5. 3)	1.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1. 5.17 ~ 5.23 (7일간)	원안가결
제84회 임시회	제1차 (2001. 5.21)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2001. 6.18)	1.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 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1. 6.21 ~ 7.10 (20일간)	원안가결
제85회 제1차정례회	제 1 차 (2001. 7. 3)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원안가결
	제 2 차 (2001. 7. 7)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견 - 내용 : 감사계획서 작성·채택	원안가결

## 라. 의안심사 내용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 8. 29 유규상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2000. 9. 1 제78회 임시회 (폐회중)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여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외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2001.1.8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으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함 위함.

#### 3. 주요골자

의원의 국외연수시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유규상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채택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5. 3 유규상 의원외 1인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1. 5. 21 제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우리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여 의회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8조의2)
- 나. 구의회 의장은 과태료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8조의5)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유규상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채택 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1. 제 안

2001. 5. 3 김화형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1. 5. 21 제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자치단체의 주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한다)을 하가 할 수 있다(안 27조의2 제1항)
- 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개시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27조의2 제2항)
- 다.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기는 의안내용에 관련된 발언은 원구성과 회기결정 의제를 제외한 첫 번째 의안의 상정 전에 발언하며, 그이외의 발언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되 총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안 제27조의2 제3항)
- 라.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한다(안 제27조의2 제4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김화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을 심사채택 하였음

## 2. 행정관리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2기	2000. 7. 8 ~ 2001. 7. 10	최광진 의 원	한한열 의 원	유규상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최태중 이진수 이기봉 조재구 의원	총 10명

### 나. 안건처리 현황

행정관리위원회는 제78 임시회중 (2000. 7. 19) 최초 개의하여 제85회 제1차 정례회까지 2001년도예산안 등 4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하반기 전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구행정사무감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원	기타
	개정	제정 (폐지)							
48	29	1 (1)	1	2	-	-	3	-	11

##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8회 임시회	제1차 (2000. 7.19)	1. 간사선임의견 - 간사 : 한한열 의원	
	제2차 (2000. 7.20)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상부서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과 - 보고자 : 해당과장	
	제3차 (2000. 7.21)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상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 보고자 : 해당과장 -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제4차 (2000. 7.24)	1.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찬성의견채택 원안가결
	제5차 (2000. 7.2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79회 임시회	제1차 (2000.10.2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 정조례안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2000.10.27)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2000.10.2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안	수정가결
	제4차 (2000.10.2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0회 임시회	제1차 (2000.11.1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2000.11.1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3차 (2000.11.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차 (2000.11.20)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2000.12. 1)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김승억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서영현 세무2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2차 (2000.12. 4)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견 - 보고자 : 부성철 감사담당관 김진태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박영석 동기능추진반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3차 (2000.12.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2000.12. 8)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예산안 - 보고자 : 부성철 감사담당관 김진태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원안가결
	제5차 (2000.12. 9)	1. 2001년도 예산안 - 보고자 :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6차 (2000.12.11)	1. 2001도 예산안 - 보고자 : 김승억 재무과장 변명범 세무1과장 서영현 세무2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82회 임시회	제1차 (2001. 2.22)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견 - 보고자 : 부성철 감사담당관 김진태 총무과장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제2차 (2001. 2.23)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견 - 보고자 : 김승억 재무과장 변명범 세무1과장 서영현 세무2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3차 (2001. 2.24)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견 - 보고자 :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4차 (2001. 2.27)	1. 행정구역(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안 3.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찬성 의견 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83회 임시회	제1차 (2001. 4. 2)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4회 임시회	제1차 (2001. 5.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2001. 5.1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2001. 5. 2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견	원안가결
제8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2001. 6.2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부성철 감사담당관 김진태 총무과장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유정일 광고물특별대책반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제2차 (2001. 6.23)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권상우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3차 (2001. 6.25)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김승억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서영현 세무2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4차 (2001. 7. 3)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차 (2001. 7. 7)	1.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견	작성채택
	제6차 (2001. 7. 9)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찬성의견채택 원안가결

## 라. 의안심사 내용

### ◆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2000. 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의견청취안은 2000. 7.24 제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변경이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구 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비 고
	법정동 (행정동)	필지수	면적(m <sup>2</sup> )	법정동 (행정동)	필지수	면적(m <sup>2</sup> )	
제1안	북가좌동 (북가좌2동)	135	14,256.30	남가좌동 (남가좌2동)	135	14,256.30	남가좌제7구역 재개발로인한 동간경계변경
제2안	남가좌동 (남가좌2동)	393	36,699.00	북가좌동 (북가좌2동)	393	36,699.00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제1안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음.

---

## ◆ 구립테니스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안 ◆

---

### 1. 제 안

2000. 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의견청취안은 2000. 7.24 제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서대문구립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관리비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관리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

### 3. 주요골자

가. 대상사무 : 구립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나. 시설현황 : 테니스장 2개소(4면)

다. 위탁범위

-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테니스장 관리운영

라. 위탁예정일 : 2000년 8월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 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7.25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의 인상을 통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려는 개정으로 각종 입찰참가등록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수료의 인상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 징수의 취지에 알맞게 입찰참가등록에서부터 계약시까지의 제반비용을 현실화시켜 입찰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등록시 받는 수수료 징수율을 제고함에 있어 수수료 종류 및 징수 금액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현재의 입찰참가등록시 1건당 수수료 550원을 입찰금액 1억원미만 1건당 2,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1건당 3,000원, 3억원이상 1건당 5,000원으로 인상함에서 일괄 적으로 1건당 5,000원으로 수정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 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7.25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맞추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물품 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주관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단가를 상향조정(3만원이하→30만원미만)하여 구매절차를 간소화 함.
- 나.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조정(물품취득가격 1천만원미만 물품→장부 상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물품)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 다.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안 제16조 제4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2000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 1. 제 안

2000. 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7.25 제78회 임시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변경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홍은동 356-43외 3필지를 취득하여 처분절차 통하여 홍은동 사회복지관 예정 부지인 홍은동 48-29호 와 교환하고자 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6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 를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제7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7조제1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3표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부의하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6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 구역재개발 삼성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북가좌동 68-101외 119필지(0.013㎢)를 남가좌동에 편입(개정연혁표 4)를 신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2000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2000.10.27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447-7호상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고자함.
- 나. 홍제동 307-36호(43평)의 재건축부지내 국·공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임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7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 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 (2000.7.29 개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97.12. 5 개정)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97.10.15 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 민원 및 증명민원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부동산중개업법 민원신청수수료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 : 법인 2만원, 개인 8천원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수수료 : 2만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3천원

####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 건축물대장등본·초본발급 수수료 - 삭제

#### 다.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확인원발급 수수료 - 삭제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7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폐지이유

동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7.29)개정되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8 제79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경비와 투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람객이 즐겨 찾는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기금은 서대문구 출연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등 수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투자사업비와 운영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 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9 제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지방세 관련 용어 변경과 신설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종전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 통합·변경 (안 제6조의 2)
- 나. 서대문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심의범위를 서대문구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로 한정 (안 제14조)
- 다.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0.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0.29 제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을 7급까지 확대적용 (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경감.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
- 다.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하며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1.15 제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편의를 제공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의무 폐지(안 제5조③항)
- 나. 사용허가 제한에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3호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삭제(안 제11조②항2호)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1.15 제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지정제 및 서울특별시수입 증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기위하여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의무, 계약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3으로 함.(안 제6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1.16 제8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 자함.

### 3. 주요골자

-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고,
  - 장학금 지급청구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타기관, 민간단체로 부터의 장학금 수혜 여부와 재학증임을 확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규제사항이 유명무실하여. 제9조 제1항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1.17 제8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2000. 11월말까지 전면시행 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동장에게 위임된 각종 사무에 대하여 동장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구로 이관하고, 삭제.(안 제5조제1항 별표)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 제 안

2000.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1.20 제80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가. 홍은2동 경로당, 남가좌2동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북아현1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건물3동, 토지 2,808.6㎡를 매입하고자 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함.(안 제6조)
- 나. 제7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그려하지 아니한다.(안 제7조제1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함.

### 3. 주요골자

가.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은,

-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고,
- 또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장학생추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급함에 따라 시일이 요하는 사항으로 새 학기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제9조제5항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를 “삭제”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용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함.

### 3. 주요골자

- 가. 용자대상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중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2항제3호)
- 나. 용자금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내용 삭제 (안제6조)
- 다. 용자금 반환 사유중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내용삭제 (안 제16조제1호)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서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함.(안 제5조)
- 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
-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폐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발생 “7일이내에” 신고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신고대상에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 되었을 때”를 삭제함.(안 제16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 중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그 존치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2000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과 관련하여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에 해당되는 기납부한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 및 준수사항 등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규정 되었거나 상호 모순된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중 “사용기간중”을 “사용시간중”으로 변경하여 어감에 맞게 고침.
- 나.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중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안전사고예방 내용 신설
- 다. 조례 제6조 제1~3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
- 라. 조례 제7조 규정중 제2항의 문화강좌 등록기한은 제1항의 문화강좌 고시에 명시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의 수강료 반환불가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신설
- 마. 조례 제9조 규정중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입장권을 발행할때 회관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한다는 조항은 제2항의 수표관리가 회관의 전담으로 검인조항을 삭제하고 제3~4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 (북아현2동장, 흥은1동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한 근거 삭제(안 제6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살계하고 운영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 조항 폐지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규정
- 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10년 이상 장기간 마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 신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열람의 제한 및 수수료 반환제한에 대한 제재사유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안 제4조)
- 나. 수수료반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안 제7조2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2001. 2.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2001. 2. 5 제82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은평구 응암 4-2 재개발구역 사업지구내 우리구 북가좌2동 275-1호가 포함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세금을 2개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북가좌2동 275-1호 1필지/0.0008km<sup>2</sup>(체비지)를 은평구에 편입한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서 채택.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

### 1. 제 안

2001. 2.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2. 5 제82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건축법제8조4항의 폐지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해 2000. 1. 12.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로 제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안 제2조)
- 다. 주변지역의 지정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안 제3조)
- 라. 구청장은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지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계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지정예고하고, 주변지역 주민·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대문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조1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1. 제 안

2001. 2.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변경안은 2001. 2. 5 제82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理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가. 대현동 17-37 학교용지 76㎡

대현동 17-1 대 605㎡

북아현동 1-1680 대 53㎡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재산으로  
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5호의거 수의계약 매  
각하고자 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1. 3.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4. 2 제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인력 보강을 위하여 이에 맞도록 정원조례를 조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총정원 1,152명 → 1,153명 (증1명)

집행기관의 정원 : 1,125명 → 1,126명(증1명)

나. 부칙 제2조중 「표2」의 정원의 총수 “1,197명”을 “1,1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70명”을 1,171명”으로 한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1. 3.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4. 2 제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은 제외)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2의 나항 (2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란 다음에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란(23) ~ (27)을 신설한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5. 18 제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물가대책장관회의, 2001. 1. 31)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현행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토세 저세율(0.3%) 적용
- 나. 개정 :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토세 저세율(0.3%) 적용
- 다. '98~2000년까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었으나, 2000년말 "전용면적 60㎡이하"로 감면 축소한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임.
- 라. 적용기한 : 2003년 12월 31일까지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5. 18 제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말소)에 관한 등록을 신청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제14593호 : 그2)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자목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자목에 “(2)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 등록 : 1건 (1,000원)”을 신설함. {별표 (제3조와 관련임)}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5. 18 제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 연희동 산5 - 94 임 262㎡

연희동 141 - 37 임 21㎡

연희동 163 - 41 임 21㎡등 3필지를 매입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및 동기능전환으로 동업무의 구청이관으로 방문민원의 주차장으로 활용 및 각 부서 사무실의 협소로 대기실, 자료실, 창고등 사용 하기 위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5. 19 제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일부개정('99. 5. 29)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 (안 제2조제①항)
- 나.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 (안 제2조제①항)
- 다.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 (안 제2조제②항 1호)
- 라. 수수료액 별표 내용 중 개정
  - 1)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 (안 별표 제1호)
  - 2)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 (안 별표 제사목)가.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1. 5.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5. 19 제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이 타직렬에 비해 낮기에 이를 개정시켜 대상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 3. 주요골자

별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중 근무상한연령란중 "52세"를 "55세"로 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 1. 제 안

2001.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 3. 주요골자

남가좌1동 104-11 소재 현재의 분회경로당이 협소하고, 난방시설등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초래함에 따라 남가좌동 104-11외 1필지상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하여 노인복지센타로 건립하고자 함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2001.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냉천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천연동 119-1호외 35필지/0.003km<sup>2</sup>를 냉천동에 편입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6. 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정이유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이 2001. 6. 30자로 만료되나, 아직도 이관사무수행, 대민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동기능전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부칙” 제2조(유효기간)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 까지로 하여 1년 6월간 연장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함.

### 3. 복지건설위원회

####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2기	2000 . 7 . 1 ~ 2001. 6. 30	허준구 의 원	김화형 의 원	기창표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우유근의원	총10명

#### 나. 안건처리현황

복지건설위원회는 제78회 임시회부터 제85회 제1차 정례회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안건과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결산안 등 현안업무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심의처리 하는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였고 또한 매년 1회에 한하여 소관부서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 수행된 업무는 장려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효율적인 구정실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원	기타
	제정	개정	폐지							
29	3	13		2		1		3		7

####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9회	제 3 차 (2000. 10. 30)	1. 홍제4동 창구아파트진입로~노인주간보호센타간 경사로현장확인 2. 난지퇴비화시설현장확인	
제80회	제 1 차 (2000. 11. 1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2000. 11. 1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제 3 차 (2000. 11. 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기금조례제정안	원안가결
	제 4 차 (2000. 11. 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 5 차 (2000. 11. 20)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	찬성의견 찬성의견 찬성의견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2000.12.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 보고자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제 2 차 (2000.12.4)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 보고자 : 주택과장 권원혁,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과장 박영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지도과장 곽상욱	
	제 3 차 (2000.12.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찬성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4 차 (2000.12.8)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세부설명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2. 2001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세부설명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수정안 가결
	제 5 차 (2000.12.9)	1. 2001년도예산안 - 세부설명 : 주택과장 권원혁,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과장 박영규	
	제 6 차 (2000.12.11)	1. 2001년도예산안 - 세부설명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지도과장 곽상욱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2회	제 1 차 (2001.2.2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이경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제 2 차 (2001.2.23)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보 고 자 : 주택과장 권원혁,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과장 박영규	
	제 3 차 (2001.2.24)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보 고 자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지도과장 박상욱	
제83회	제 1 차 (2001.4. 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부 결 원안가결
제84회	제 1 차 (2001.5.1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찬성의견
	제 2 차 (2001. 5. 22)	1. 백련근린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시설반대청원 (소개의원 : 조재구)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채택의견	부 결 원안가결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2001.5.18)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 보고자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제 2 차 (2001.6.23)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보 고 자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지도과장 박상욱	
	제 3 차 (2001.6.25)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보 고 자 : 주택과장 권원혁,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과장 박영규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85회 제1차	제 4 차 (2001. 7. 3)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정례회	제 5 차 (2001. 7. 7)	1. 2001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원안가결
	제 6 차 (2001. 7. 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 조례증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 라. 의안심사내용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1.15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으로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구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목욕업소 등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용자대상으로 확대,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용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용도는 용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의 용자 지원에 사용토록 개정(안제3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안제5조)
- 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용자대상에 환경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중 목욕업 소 등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추가하여 용자대상을 확대(안제12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1.15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우리구 2000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제4조제3항 중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 나. 제5조의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 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민간위탁동의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동의안은 2000. 11.16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업무를 서대문구노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노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과 노인복지를 증진하며 주민 참여행정을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대상사무 :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
- 나. 시설현황 : 어린이공원 27개소 ( $43,514.4\text{m}^2$ )
- 다. 위탁범위
  - 어린이공원 청소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
  - 시설물, 수목보호관리
- 라. 위탁예정일 : 2001년 1월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기금조례제정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11.17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 업소 과징금이 시·도와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식품진흥기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나. 기금의 운용

- 1)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 2)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 3) 모범업소 용자
- 4)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 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 라.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1.18 제80회 임시회 제4차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주차거부 금지, 노상주차장의 징수방법, 하역주차구간 내용중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삭제 및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제3조 제5호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삭제
- 나. 제3조 제7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를 삭제
- 다. 제6조 제2항 제3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삭제
- 라. 제8조 제5항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를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완화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 가결하였음.

##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2000. 11.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2000. 11.20 제80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사유

연희동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시민아파트( 연희A지구 )를 서울시의 철거 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함.

### 3.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입안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일 반 주거지역	서대문구 연희동 188-40번지 일대	14,868,305.2	감) 6,401	14,861,904.2	용도지역 변경결정 ( 연희동 A지구 시민아파트)
녹지 지역	자 연 녹지지역	"	1,962,318.8	증) 6,401	1,968,719.8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

## ◆ 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 1. 제 안

2000.1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의견청취안은 2000.11.20 제80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사유

연희동과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민아파트(연희A지구, 홍제지구)에 대하여 서울시의 철거 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와 천연1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 안산순환도로 확장구간 중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함.

### 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입안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홍제동322-19번지 일대 연희동196-13번지 일대 천연동5-627번지 일대	2,067,424.9	증) 18,982	2,086,406.9	-홍제동 시민아파트 부지 -연희동시민아파트(A지구) -천연동 자투리
		궁동근린공원	연희동188-400번지 일대	107,426	증) 6,401	113,827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

##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 안

2000.1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의견청취안은 2000.11.20 제8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도시여건의 변화와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2000.7.1)에 따라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서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정비 변경결정 하고자 함.

### 3.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 변경결정(안) 입안조서

연 번	가로명	구 분	세부 지구명	위 치	연 장 (m)	폭 원 (m)	면 적 (㎡)	비 고
1	기 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사천교~연희동	2,000	양측12m	48,000	- 10m 도로변 폐지	
		변 경		0	0	0		
2	모래내길	기 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망원동~신영동	7,700	양측12m	184,800	- 서대문구 구간 $L=6,100m$
	"	변 경	일반 미관지구	남가좌동105-3~ 홍은동274-82	2,330	편측 및 양측12m	33,360	- 홍제천변 1,880m 폐지 - 잔여구간 3,770m는 연희로, 세검정길로 이관
3	연희로	기 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연희동 ~홍연교	2,200	양측12m	52,800	- 홍제천변 $L=1,100m$ 폐지
	"	변 경	일반 미관지구	연희동193-8~ 홍은3동 217-5	3,600	편측 및 양측12m	73,200	- 모래내길에서 분리 결정 1,400m
4	세검정길	기 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홍제동274-46~ 홍은동산1-1	2,370	양측12m	56,880	- 모래내길에서 분리 결정
	"	변 경	일반 미관지구	홍제동274-46~ 홍은동산1-1	2,370	양측12m	56,880	

연번	가로명	구분	세부지구명	위치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비고
5	가좌로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연희동 ~신사동	3,900	양측12m	93,600	-서대문구 구간 L=1,545m
	"	변경	일반 미관지구	연희동89-12 ~ 홍은3동338-146	1,545	양측12m	37,080	
6	응암로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남가좌동~대조동	3,750	양측12m	90,000	90,000
	"	변경	일반 미관지구	북가좌동3868 ~ 북가좌동335-1	1,550	양측12m	37,200	
7	성산대로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연대입구~사천교	2,270	양측12m	54,480	
	"	변경	일반 미관지구	신촌동95 ~ 연희동542-44	2,270	양측12m	54,480	
8	성산대로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봉원동45~신촌동1	1,350	양측12m	32,400	
	"	변경	일반 미관지구	봉원동45~신촌동1	1,350	양측12m	32,400	
9	의주로 통일로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독립문 ~ 은평초등학교	3,280	양측15m	98,400	-서대문구 구간 L= 2,880m 중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80m제외 -역사문화미관지구 550m 존치
	의주로	변경	일반 미관지구	독립문 ~ 홍제동 156-330	1,380	편측 및 양측15m	35,100	
	통일로		일반 미관지구	홍은동산1-129 ~ 홍은동49-346	670	양측15m	20,100	
10	수색로 연희로	기정	중심 미관지구	동교동~수색동	4,330	양측12m	40,680	- 서대문구 구간 2,160m
		변경	일반 미관지구	북가좌동371 ~ 창천동512-3	2,160	편측 및 양측12m		
11	서강로 백범로 (연세로)	기정	중심 미관지구	연대앞~공덕동	4,600	양측12m	12,000	-서대문구 구간 L=500m
	"	변경	일반 미관지구	연대앞~ 신촌로터리	500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 1. 제안

2000.11.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12. 5 제81회 제2차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규제를 받거나 불편한 규정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업무 등을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 까지 건축합의토록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삭제)
- 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중 “관할 동장이 발행한” 부분을 삭제함 (안 제16조 부분삭제)
- 다.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토지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영 제40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8조 삭제)
- 라. 징수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 할수 있다 를 “근저당 설정등 채권 확보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로 완화하여 시행함 (안 제33조제2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 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안 ◆

---

### 1. 제 안

2000.11.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의견청취안안은 2000.12.5 제81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번지·냉천동 75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 건축물 대부분이 소규모 필지에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있고 도로등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3.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입안내용

#### 지역현황

- 구역의 명칭 : 충정로·냉천주택재개발구역
- 위 치 : 충정로2가 65번지, 냉천동 75번지 일대
- 면 적 : 45,572㎡(583필지)
- 기존건물 : 282동

#### 사업계획

##### ○ 토지이용계획

- 택 지 : 39,344㎡
- [ 공공시설 : 6,228㎡(도로 3,859㎡, 녹지 2,369㎡)

○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용적율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	층수 및 높이
22% 이하	202% 이하	공동주택	18층 이하, 48.4m 이하

○ 주택의 규모별 비율

전용면적 계	34㎡ (13평형, 임대)	60㎡ (23평형)	82㎡ (31평형)	112㎡ (40평형)
아파트 12개동 784세대	150세대	156세대	384세대	94세대

○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건물 철거 정비후 공동주택건축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함.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안

2000.11.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0.12.5,22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0. 4. 3) 및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업무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 규정 (안 제7조)
- 나. 동기능 전환 관련 사무이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 다. 행정규제 조항 폐지 (안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 11. 27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2. 5 제81회 제2차정  
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규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 등에 관해 규정한 조례를 전문 개정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안 제6조)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  
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
  -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  
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안 제6조)
  - 건조, 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25~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 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용기의 종류·재질(안제9조)
  - 용량은 2ℓ, 3ℓ, 5ℓ, 10ℓ, 20ℓ를 기준
- 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안 제10조)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  
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 삭제

마. 수거 · 운반 · 보관기준 설정(안 제12조)

-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 운반토록 함.

#### 4. 심사결과

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0. 1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0. 12. 5 제81회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법률 미근거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기위하여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  
(안 제6조 )

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행정규제 조항 폐지  
(안 제10조,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 위탁에관한조례안 ◆

---

### 1. 제 안

2001. 3.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1. 4. 2 제83회 임시회제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가. 기존의 기술적 공무원이 종합행정(민원조사, 수방, 제설 등)을 수행하면서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를 병행하여 공사현장 상주 불가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었으나 감독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나. 위와 같은 사유로 2000년 9월부터 100억원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전면 또는 부분 책임감리로 시행하지 않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공사(시·구비포함) 중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각종 공사의 용어정의 (안 제2조)

- (1)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공사 (안 제4조)

- 도로및도로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시설물 등 주요시설물 공사
-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다.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 업무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다. (안 제5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1. 5. 18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위원의 구성을 17인 이내에서 22인 이내로 규정  
(안 제3조)

### 4. 심사결과

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관한의견정취안 ◆

---

### 1. 제 안

2001. 4.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1. 5. 18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본대상지에 위치한 학교(추계예술대학,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추계초등학교)는 기존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득한 학교들로서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하여야 할 일부 건축물 증축 및 신축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기존 학교로 운영·관리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자 함.

###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입안조서

□ 입안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신 설	학 교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45,720.1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1. 제 안

2001.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제안이유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문화·환경·관광·교통 등으로 확대되고, 특히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 및 재난·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제3조)

- (1) 지역사회개발·사회복지·환경보전·문화·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활동
- (2)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나.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제4조~제6조)

- (1) 센터의 설치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2) 센터의 기능 :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집행 등(제5조)
- (3) 센터의 운영 : 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제6조)

#### 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자원봉사주간 운영·자원봉사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 진흥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11조)

#### 라. 자원봉사자(또는 단체)에 대한 실비지급(제12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신고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

### 1. 제 안

2001.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허가(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정한 동 조례가 '96. 12. 2자로 제정되었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2.8.)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99.2.8.)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제3조에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제명개정 - “허가”를 “신고”로 개정
- 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증 제3조(별표)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의 규정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에 대한 징수기준을 삭제한다.(안제3조)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1.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2001. 7. 9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2.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25조제3항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주역할이 환경보전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 실제역할과 부합되지 않아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환경보전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둔다. (안제25조3항)

### 4.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검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명	활동기간	주 요 내 용	위원회 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 7.19 2000. 7.26 ~ 2000. 7.27 (3일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의결	위원장 : 정혜연 의원 간사 : 김대봉 의원 위원 : 이기봉 의원 한한열 의원 유규상 의원 최태중 의원 김화형 의원 정일출 의원 우유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 12. 1 2000. 12. 12 2000. 12. 13 2000. 12. 14 2000. 12. 15 (5일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위원장 : 정일출 의원 간사 : 최태중 의원 위원 : 유규상, 이기봉 의원 김화형, 전성장 의원 김대봉, 정혜연 의원 한한열, 최용완 의원 우유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1. 6.21  2001. 7. 4 (2일간)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 의결  2.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 의결	위원장 : 조재구 의원 간사 : 우유근 의원 위원 : 유규상 의원 한한열 의원 최용완 의원 김화형 의원 김대봉 의원

## ■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7.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2000.7.26~27 제78회 임시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규모 등 심의·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안이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경비와 도로개설 등 장기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 나) 주요골자

####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안) (A=B+E)	기정예산액			금회추경		비고
		계 (B=C+D)	당초예산액 (C)	간주처리 (D)	예산액 (E)	증(△) 감(%)	
합계	144,219	126,994	115,929	11,065	17,225	13.6	
일반회계	128,717	113,527	102,755	10,772	15,190	13.4	
특별회계	15,502	13,467	13,174	293	2,035	15.1	
의료보호기금	3,567	3,563	3,563		4	0.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3	140	140		363	259.3	
주차장	11,432	9,764	9,471	293	1,668	17.1	

## 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현황

##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위원회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장 별	항 별			
총 액			128,717,551	113,527,169	15,190,382
운 영 위원회	소 계		2,875,603	2,487,500	388,103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2,875,603	2,487,500	388,103
행 정 위원회	소 계		69,924,806	63,117,405	6,807,401
	일반행정	기획관리	35,561,010	34,462,810	1,098,200
		공보관리	7,694,581	5,414,368	2,280,213
		행정감사	114,114	112,525	1,589
		내무행정	16,656,329	14,174,143	2,482,186
	사회개발비	재무행정	2,082,922	1,352,152	730,770
		보 건	3,502,671	3,297,228	205,443
		도시개발	171,032	171,032	0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529,339	520,339	9,000
	지원및기타경비	예 비 비	3,612,808	3,612,808	0
복지건설 위원회	소 계		55,917,142	47,922,264	7,994,878
	사회개발비	보 건	256,700	256,700	0
		생활환경	18,831,410	17,016,026	1,815,384
		공원녹지관리	2,533,661	2,004,492	529,169

구 분 위원회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장 별	항 별			
복지건설위원회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14,299,887	13,098,019	1,201,868
		주택사업	530,372	406,636	123,736
		도시개발	1,774,244	1,352,244	425,000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5,933,630	5,745,729	187,901
		치수및재해대책	165,835	165,835	0
		도로관리	10,975,164	7,276,344	3,698,820
		교통행정관리	613,239	600,239	13,000

##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위원회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장 별	항 별			
총 액			15,501,952	13,466,626	2,035,326
행정관리 위 원 회	소 계		502,864	139,584	363,280
	사회개발비	주민소득지원	502,864	139,584	363,280
복지건설 위 원 회	소 계		14,999,088	13,327,042	1,672,046
	사회개발비	의료보호기금	3,567,236	3,563,602	3,634
	경제개발비	주차장관리	11,431,852	9,763,440	1,668,412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요지

1) 의회운영위원회(보고자 : 간사 유규상 의원)

- 심사일시 : 2000. 7. 22. 제7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 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75,603 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487,500천원보다 388,103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재석의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음.

2) 행정관리위원회(보고자 : 간사 한한열 의원)

- 심사일시 : 2000. 7. 20,21 제78회 임시회 제2~3차 행정관리위원회 상정, 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70,427,670천 원으로써 기저예산 63,256,989천원 보다 7,170,681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일반회계 1개항목 12,000천원을 삭감, 의결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하도록 요구 하였음

3) 복지건설위원회 (보고자 : 간사 김화형 의원)

- 심사일시 : 2000. 7. 20,21,24 제78회 임시회 제2~4차 복지건설위원회상정, 의결

199. 7. 24. 제70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0,916,230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일반회계 5개항목 138,000 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1개항목에 5,243천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 하였음

마)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9. 7. 26, 27)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과장(윤내원)의 동의를 받아 재석위원 7명 전원 창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유 첨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관 련
번 호	134

2000. 7.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거 편성·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행정경비와 주민편익사업중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의효과와 기여측면에서 중점도가 다소 낮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그간 IMFFH 인한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등의 장기계속사업을 초기에 마무리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등에 증액하여 우리구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케 하고자 함

### 2. 수정예산안 주요골자

#### 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 144,219,503천원

- 일반회계 : 128,771,551천원
- 특별회계 : 15,501,952천원

#### 나. 세출예산 수정내역

- 총수정규모 : 363,500천원
- 총 팔      - 감액 : 5개항목 363,500천원  
                - 증액 : 7개항목 363,500천원
- 일반회계    - 감액 : 5개항목 363,500천원  
                - 증액 : 7개항목 363,500천원
- 특별회계    : 없음(원안과 같음)

##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 ■ 일반회계

- 감액 3건(₩ 363,5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쪽
세 향	목 (세목)		금회추경	조정안	증(△)감	
총 계	5 건		870,536	507,036	△363,500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등	60,000	48,000	△12,000	53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산불예방홍보물제작작	8,536	7,036	△1,500	72
도시정비	보조사업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	422,000	372,000	△50,000	81
지역경제관리	기 타	도시가스사업기금	100,000	80,000	△20,000	87
도로건설	자체사업	북가좌초등학교앞 보도육교설치	280,000	0	△280,000	91
		이하여백				

##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 1. 일반회계

- 증액 7건 (₩ 363,5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쪽
세 항	목 (세목)		금회추경	조정안	증(△)감	
총 계		7 건	337,117	700,617	363,500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광 고 비	0	2,000	2,000	신설
"	"	주민과의 간담회	0	12,000	12,000	신설
사회진흥	자체사업	분무기(10대)구입	0	5,000	5,000	신설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 비교시찰	22,360	35,860	13,500	45
유아복지	보조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 (아동별 지원)	0	138,435	138,435	신설
중소기업관리	경상적경비	중소기업 해외수출촉진단 활동지원	14,757	20,000	5,243	88
도로건설	자체사업	관내도로정비 (각동사업비)	300,000	487,322	187,322	91
		이하여백				

##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11.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2000.12.12 제81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규모 등 심의·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안이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중 필수불가결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할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 나) 주요골자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금회추경	비고
총 계	157,643,841	157,643,841	3,013,290	
일반회계	139,724,589	139,724,589	3,013,290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신축 : 1,500,000천원 홍은1동종합사회복지관교환부지매입 : 360,490천원 홍은2동노인치매센터 건립 : 1,000,000천원 구의회청사개보수에 따른자산취득비등 : 152,800천원
특별회계	17,919,252	17,919,252		
의료보호기금	5,137,156	5,137,15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2,864	502,864		
주 차 장	12,279,232	12,279,232		

\*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매입 및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등이 경비의 성질상 2000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함.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7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2001년 7월 26,27일(제86회 임시회 제2차~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가. 제안이유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 영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금회추경	비 고
총 계	157,643,841	157,643,841	3,013,290	
일반회계	139,724,589	139,724,589	3,013,290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신축 1,500,000천 원 홍은1동종합사회복지관교환 부지매입 360,490천 원 홍은2동노인치매센터 건립 1,000,000천 원 구의회청사개보수에 따른자산 취득비등 152,800천 원
특별회계	17,919,252	17,919,252		
의료보호기금	5,137,156	5,137,15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2,864	502,864		
주차장	12,279,232	12,279,23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 이정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부금 지원사업인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3개사업이 당해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의거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가. 세입·세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는 변동없음.

회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총계	157,643,841	157,643,841		
일반회계	139,724,589	139,724,589		
특별회계	17,919,252	17,919,252		

#### 나. 내용

- 2000년도 일반회계중 200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세출예산의 이월)
  - 사업내용 :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3개사업
  - 명시이월 내역

해당부서	사업명	2000년예산	집행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3,490,191	476,901	3,013,290	
구의회사무국	구의회청사 보수에 따른 집기류 등 구입	190,191	37,391	152,800	
총무과	북아현1동 신축	1,500,000	0	1,500,000	
사회복지과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	800,000	430,510	360,490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	1,000,000	0	1,000,000	

- 4개 사업예산 34억9천만원중 4억7천7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예산잔액 30억1천3백만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 사항임.

#### 4.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요지

##### 가. 의회운영위원회(보고자 : 간사 유규상 의원)

- 심사일자 : 2000년 12월 11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상정.의결

##### ◦ 심사내용

구의회청사 개보수에 따른 집기류 장비 등 구입비 152,800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아월 하고자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나. 행정관리위원회(보고자 : 최태중 의원)

- 심사일자 : 2000년 12월 8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상정.의결

##### ◦ 심사내용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신축 등 공사비 1,500,000천원의 지출이 2000년도내에 완료될 수 없음에 따라 2001년도로 명시아월하고자 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다. 복지건설위원회(보고자 : 간사 김화형 의원)

- 심사일자 : 2000년 12월 8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의결

##### ◦ 심사내용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으로 2000년도내에 공사계약 및 착공 불가함에 따라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비 360,490천원과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건립비 등 1,000,000천원을 2001년도로 명시아월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6.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

## 7.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아현 주민자치센터 공사 등 4개공사의 추진 절차과정에서 금년도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01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임에 따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2001회계년도 예산안

2000.11.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2000.12.12~15 제81회 제2차 정례회중 제2~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음.

### 가. 제안이유

200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임.

### 나. 2001년도 예산안 규모

□ 총괄표 (구전체)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01 예산액	2000 예산액	증(△) 감		비 고
			증 감 액	증 감율	
총 계	130,144	115,929	14,215	12.3 %	
일반회계	113,040	102,755	10,285	10.0 %	
특별회계	소 계	17,104	13,174	3,930	29.8 %
	의료보호기금	6,249	3,564	2,685	75.3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9	139	380	273.4 %
	주 차 장	10,336	9,471	865	9.1 %

##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 산 액 (2001년도)	전년도 예산 (2000년도)	증(△) 감	증감률	비고
계	113,040,000	102,755,238	10,284,762	10.0 %	
지방세수입	17,577,944	17,019,102	558,842	3.3 %	
경상적세외수입	7,542,105	7,754,043	△211,938	△2.7 %	
임시적세외수입	19,127,964	15,932,983	3,194,981	20.1 %	
조정교부금	58,737,419	54,899,288	3,838,131	7.0 %	
국고보조금	4,414,360	2,797,593	1,616,767	57.8 %	
시.도비보조금	5,640,208	4,352,229	1,287,979	29.6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113,040,000	100.0	102,755,238	100.0	10,284,762	10.0 %
경상예산	67,587,707	59.8	64,665,950	62.9	2,921,757	4.5 %
인건비	34,241,783	30.3	35,065,428	34.1	△823,645	△2.3 %
경상적경비	33,345,924	29.5	29,600,522	28.8	3,745,402	12.7 %
사업예산	41,012,268	36.3	33,456,738	32.6	7,555,530	22.6 %
보조사업	16,322,568	14.5	11,160,738	10.9	5,161,830	46.2 %
자체사업	24,689,700	21.8	22,296,000	21.7	2,393,700	10.7 %
예비비등	4,440,025	3.9	4,632,550	4.5	△192,525	△4.2 %
예비비	2,800,000	2.5	3,612,808	3.5	△812,808	△22.5 %
기타	1,640,025	1.4	1,019,742	1.0	620,283	60.8 %

##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 산 액 (2001년도)	전년도 예산 (2000년도)	증(△)감	증감률	비 고
합 계	17,104,060	13,174,067	3,929,993	29.8 %	
의료보호기금	6,249,078	3,563,602	2,685,476	75.4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8,625	139,584	379,041	271.6 %	
주 차 장	10,336,357	9,470,881	865,476	9.1 %	

## □ 예산과목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과 목	2001예산액	2000예산액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30,144,060	115,929,305	14,214,755	12.26%
일반회계	소 계	113,040,000	102,755,238	10,284,762	10.0%
	선거관리비	선 거 관 리	19,170	0	19170 %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1,712,122	2,487,500	△775,378 31.7%
	일반행정비	기획 관 리	36,159,251	34,963,810	1,762,441 5.04%
		공보 관 리	4,345,664	3,911,968	433,696 11.08%
		행정 감사	129,954	112,525	17,429 15.49%
		내무 행정	16,544,139	13,169,143	3,374,996 25.63%
		재무 행정	1,176,203	1,072,826	103,377 9.64%
		보 건	3,831,371	3,408,223	423,148 12.42%
	보건및생활환경 개선	생활 환경	14,165,646	16,961,026	△2,795,380 16.48%
		공원녹지관리	1,690,366	1,599,264	91,102 5.70%
		사회 보장	18,197,300	12,463,468	5,733,832 46.0%
	주택및지역사회 개발	주택 사업	366,887	401,036	△34,149 8.51%
		도시 개발	713,702	673,276	40,426 6.0%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개발	1,520,262	511,717	1,008,545 197.1%
	국토 자원보존 개발	치수및재해대책	244,855	182,083	62,772 34.47%
		도로 관리	8,386,740	6,695,235	1,691,505 25.26%
	교통 관리	교통행정관리	559,579	600,239	△40,660 6.77%
	민방위관리	민방위 관리	476,789	496,091	△19,302 3.89%
	예비비	예비비	2,800,000	3,612,808	△812,808 22.50%
특별회계	소 계	17,104,060246	13,174,067	3,929,993 29.83%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6,249,078	3,563,602	2,685,476 75.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	사업비	518,625	139,584	379,041 271.6%
	주차장	사업비	10,336,357	9,470,881	865,476 9.1%

### 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요지

#### 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자 : 간사 유규상 의원)

- 심사일자 : 2000.12.11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712,122천원에 대하여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과의 간담회비 등 11개사업에 199,400천원을 각 증액 또는 신설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 조정하도록 요구 하였음.

#### 나. 행정관리위원회 (보고자 : 최태중 의원)

- 심사일자 : 2000.12.8,9,11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5,6차 행정관리위원회

- 심사내용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65,568,140천원, 특별회계 518,625천원, 합계 66,086,76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운영, 민간이전의 사회단체임의보 조금 등 총 12개 사업에 125,320천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회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7개사업에 37,500천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증액 및 삭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 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다. 복지건설위원회 (보고자 : 간사 김화형 의원)

- 심사일자 : 2000. 12.8,9,11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5,6차 복지건설 위원회

- 심사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5,759,738천원, 특별회계 16,585,435천원 합계 62,345,17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 총 65개 사업에서 975,811천원을 삭감조정하고,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남가좌2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총 9개 사업에서 914,313

천원을 증액조정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 하도록 요구하였음.

#### 4.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정 완)

200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1,301억 4천4백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 1,159억 2천9백만원보다 12.3%인 142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이중 일반회계는 1,130억 4천만원으로 2000년의 1,027억 5천5백만원보다 10.0%인 102억 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억4백만원으로 2000년의 131억 7천4백만원보다 29.8%인 3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율
합 계	113,040,000	100.0	102,755,238	100.0	10,284,762	10.0 %
지방세 수입	17,577,944	15.5	17,019,012	16.6	558,842	3.3 %
세외수입	26,670,069	23.6	23,687,026	23.0	2,983,043	12.6 %
경상적세외수입	7,542,105	6.7	7,754,043	7.5	△211,938	△2.7 %
임시적세외수입	19,127,964	16.9	15,932,983	15.5	3,194,981	20.1 %
조정교부금	58,737,419	52.0	54,899,288	53.4	3,838,131	7.0 %
보조금	10,054,568	8.9	7,149,822	7.0	2,904,746	40.6 %
국고보조금	4,414,360	3.9	2,797,593	2.7	1,616,767	57.8 %
사도비보조금	5,640,208	5.0	4,352,229	4.3	1,287,979	296 %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율
합 계	113,040,000	100.0	102,755,238	100.0	10,284,762	10.0 %
경 상 예 산	67,587,707	59.8	64,665,950	62.9	2,921,757	4.5 %
인 건 비	34,241,783	30.3	35,065,428	34.1	△823,645	△2.3 %
경 상 적 경 비	33,345,924	29.5	29,600,522	28.8	3,745,402	12.7 %
사 업 예 산	41,012,268	36.3	33,456,738	32.6	7,555,530	22.6 %
보 조 사 업	16,322,568	14.5	11,160,738	10.9	5,161,830	46.2 %
자 채 사 업	24,689,700	21.8	22,296,000	21.7	2,393,700	10.7 %
예 비 비 등	4,440,025	3.9	4,632,550	4.5	△192,525	△4.2 %
예 비 비	2,800,000	2.5	3,612,808	3.5	△812,808	△22.5 %
기 타	1,640,025	1.4	1,019,742	1.0	620,283	60.8 %

## 특별회계 규모

(단위 : 천원)

구 分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	증(△)감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7,104,060	13,174,067	3,929,993	29.8 %
의료보호기금	6,249,078	3,563,602	2,685,476	75.4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8,625	139,584	379,041	271.6 %
주 차 장	10,336,357	9,470,881	865,476	9.1 %

### 2001년 예산편성의 주요사항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해당과장으로부터 각종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에 부문별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001년 예산편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의 감소입니다.

- 그동안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던 인건비 예산이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이어 2001년에도 2.3%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의 증가입니다.

- 주민숙원사업해소와 5~6년전에 시작한 각종 공사를 내년중에 완공하기위한 사업 등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2000년보다 22.6%인 75억 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예산의 증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급여로 금년보다 74.7%가 증가한 57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보다 30.7% 증가한 35억 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육시설운영비가 금년보다 22.1% 증가한 29억 6천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이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 그밖에 '98년부터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자연사전시관 건립 부지매입 및 전시유물구입비로 13억 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과 문화원설립기금이 신규 설치되는 등 사회복지와 문화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동기능전환에 따른 노후 동청사 신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2001년 전면 실시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북아현1동과 북아현3동 청사 신축비로 38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가 금년대비 12.3% 증가한 1,301억 4천4백만원이나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59.8%인 675억 8천8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5%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410억 1천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2.6%인 75억 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자속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저소득주민보호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셨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각종 신규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적정 편성여부와
- 기타 신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규모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6. 토론요지 : 수정동의안과 같음

### 7. 소수의견 요지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8. 수정안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2월 15일 최태중 의원외 5인 구두동의안 제안

## 나. 수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제출된 2001년도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이나 사업의 효과측면과 주민복리증진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팽창 및 소모성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조정하여 노인복지 및 결식아동 등의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행정의 향상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등에 예산을 증액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다. 수정예산안 주요골자

###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음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음

### 2) 세출예산

- 2001년도 예산액 총 130,144,060천원
  - 일반회계 113,040,000천원중
    - 삭감 : 48개 항목 1,217,574천원
    - 증액 : 34개 항목 1,217,574천원
  - 특별회계 17,104,060천원중
    - 증·감조정없이 원안과 같음.

## 라.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 별첨 참조

## 9. 예산안 총칙 : 원안과 같음

## 10.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2~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12.15)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과장(윤내원)의 동의를 받아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별첨 :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6
----------	-----------

2000. 12.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수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제출된 2001년도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이나 사업의 효과측면과 주민복리증진 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팽창 및 소모성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 조정하여 노인복지 및 결식아동 등의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행정의 향상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등에 예산을 증액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2. 수정골자

#### 가. 2001년도 예산 총 130,144,060천원

- 일반회계 : 113,040,000천원
- 특별회계 : 17,104,060천원

#### 나. 세출예산 수정내역

- 총괄 (수정규모 : 1,217,574천원)
  - 삭감 : 48개 항목 1,217,574천원
  - 증액 : 34개 항목 1,217,574천원
- 일반회계
  - 삭감 : 48개 항목 1,217,574천원
  - 증액 : 34개 항목 1,217,574천원
- 특별회계 : 증감조정없이 원안과 같음

##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1.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

#### 가. 2001년도 예산

- 예산총액 : 130,144,060천 원
- 일반회계 : 113,040,000천 원
- 특별회계 : 17,104,060천 원

#### 나. 세입예산

- 예산총액 : 130,144,060천 원
- 일반회계 : 113,040,000천 원
- 특별회계 : 17,104,060천 원

#### 다. 세출예산

- 예산총액 : 130,144,060천 원
- 일반회계 : 113,040,000천 원
- 특별회계 : 17,104,060천 원

### 2. 예산총칙 사항 : 원안과 같음

### 3. 2001년도 예산안 수정조서

#### 가. 2001년도 예산안

- 예산총액 : 130,144,060천원
- 일반회계 : 113,040,000천원
- 특별회계 : 17,104,060천원

#### 나. 세출예산 수정내역

- 총 팔 (수정규모 : 1,217,574천원)
  - 삭감 : 48개 항목 1,217,574천원
  - 증액 : 34개 항목 1,217,574천원
- 일반회계
  - 삭감 : 48개 항목 1,217,574천원
  - 증액 : 34개 항목 1,217,574천원
- 특별회계 : 삭감·증액 조정없이 원안과 같음

### 4. 예산과목별 수정내역 - 별첨

## 2001년도 예산안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 산 안	2000년도 예 산	증(△감)		비 고
			예산액	증감율	
합 계	130,144,060	115,929,305	14,214,755	12.3%	
일반회계	113,040,000	102,755,238	10,284,762	10.0%	
특별회계	17,104,060	13,174,067	3,929,993	29.8%	

### 2. 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分	계		감 액		증 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2	0	48	△1,217,574	34	△1,217,574	
일반회계	82	0	48	△1,217,574	34	△1,217,574	
특별회계	-	-					

###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6.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산승인안은 2001.7.4 제8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함.

#### 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

##### 1)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영여금내역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179,664,015	122,288,945	57,375,070	18,344,329	3,010,474	449,541	35,570,726
일반회계	157,517,769	108,774,308	48,743,461	17,536,273	3,010,474	361,337	27,835,377
특별회계	22,146,246	13,514,637	8,631,609	808,056	0	88,204	7,735,349

##### 2)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59,584,217	203,373,442	179,664,016	23,709,426
일반회계	140,901,315	169,842,823	157,517,770	12,325,053
특별회계	18,682,902	33,530,619	22,146,246	11,384,373

## 3)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원인미필액) (d)	불용액 a-(c+d)=f
합계	165,039,968	143,172,536	122,288,945	21,354,803 (471,212)	21,396,220
일반회계	145,415,529	128,849,843	108,774,308	20,546,747 (471,212)	16,094,474
특별회계	19,624,439	14,322,693	13,514,637	808,056	5,301,746

## 4)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불용액	원인별현황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21,396,219	648,252	5,068,332	3,946,878	10,765,361	945,881	21,515
일반회계	16,094,473	648,252	4,655,468	3,663,796	6,204,991	900,451	21,515
특별회계	5,301,746	-0-	412,864	283,082	4,560,370	45,430	-0-

## 5) 예산의 이용 · 전용 현황

- 이용 : 없음
- 전용 :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 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1억1,300만원 전용.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6,671,801	113,886	113,886		
노인교통수당	3,054,362	42,630	-0-	2000.12.22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경로연금	809,400	13,256	-0-	"	장애인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
청소년공부방인건비	174,345	58,000	-0-	"	
보육시설운영비	2,633,694	-0-	113,886	"	

##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원인미필액)
합계	4	3,010,474	48	18,344,329 (471,212)
일반회계	4	3,010,474	45	17,536,273 (471,212)
특별회계	-0-	-0-	-0-	808,056

## 다.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分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계	2,072,139,883	905,211,170	3,202,857,296	2,297,646,126	2,977,351,053
재 난 관 리 기 금	-0-	32,316,246	32,316,246	-0-	32,316,24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92,250,779	60,361,612	182,931,612	122,570,000	352,612,391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146,650,752	93,873,248	199,665,098	105,791,850	240,524,000
노인복지기금	278,031,515	95,890,418	95,890,418	-0-	373,921,933
중소기업육성기금	759,939,560	110,531,490	1,160,531,490	1,050,000,000	870,471,050
도시가스사업기금	-0-	80,000,000	80,000,000	-0-	80,000,000
도로굴착복구기금	379,048,330	284,363,047	1,303,647,323	1,019,284,276	663,411,377
재해대책기금	216,218,947	147,875,109	147,875,109	-0-	364,094,056

## 라.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취득	관리 전환 등	계	처분	관리 전환 등		
합 계	803,016,745	11,023,557	9,258,959	1,764,598	2,384,599	1,686,414	698,185	811,655,703	
정 재 산	행 계	736,055,815	10,773,072	9,258,959	1,514,113	698,185	-0-	698,185	
	공공용 재산	703,142,863	6,385,932	4,871,819	1,514,113	250,485	-0-	250,485	
	공 용 산	32,912,952	4,387,140	4,387,140	-0-	447,700	-0-	447,700	
잡종재산	66,960,930	250,485	-0-	250,485	1,686,414	1,686,414	-0-	65,525,001	

마.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4,259,931	385,413	4,645,344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관련자료
  -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요약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요지

가.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일자 : 2001.7.3 제8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내용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  
    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

나. 행정관리위원회

- 심사일자 : 2001.7.3 제85회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 심사내용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  
    석위원 9 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

다. 복지건설위원회

- 심사일자 : 2001.7.3 제85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 심사내용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  
    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

7. 심사결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6.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1.7.4 제8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얻기위함.

### 2. 주요골자

#### □ 예비비 지출 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계	2,964,822	2,873,681	2,692,864	91,141	
일반회계	2,964,822	2,873,681	2,692,864	91,141	
특별회계	-0-	-0-	-0-	-0-	

□ 관련사업 현황 남가좌2동 선거구 보궐선거외 8개 사업

\* 지출내역 : "별첨 I" 참조

### 3. 참고사항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 관련자료

-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요약서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요지

가. 행정관리위원회

○ 심사일자 : 2001.7.3 제85회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 심사내용 :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

나. 복지건설위원회

○ 심사일자 : 2001.7.3 제85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 심사내용 :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

7. 심사결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별첨 1》

## 예비비 사용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지출 결정일	비고
	계	2,964,822	2,873,681	2,692,864	91,141	-0-	
1	남가좌2동 보궐선거	61,806	55,163	55,163	6,643	00. 4.24	
2	봉급조정수당	742,798	742,458	742,458	340	00.12.14	
3	구청사내 직원체력 단련장 설치	20,000	11,993	11,993	8,007	00.11.15	
4	제2청사내 친절교육장 설치	91,156	85,226	85,226	5,930	00. 3. 8	
5	연희제2동 신축공사	140,197	140,197	-0-	-0-	00.10.17	이월
6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84,989	34,656	34,656	50,333	00.11. 7	
7	홍제 및 3개구역 상세 계획수립용역	50,000	40,620	-0-	9,380	00. 3. 8	이월
8	공공근로사업	1,754,876	1,754,876	1,754,876	-0-	00. 1.29	
9	제설용역사업	19,000	8,492	8,492	10,508	00. 1.29	

## 나.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 1. 운영목적

구청 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세외수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재정 수입증대는 물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함.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

- 위원회 명칭 :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7 인
  - 위원장 : 정혜연 의원
  - 간 사 : 김대봉 의원
  - 위 원 : 유규상 의원, 이기봉 의원, 한한열 의원, 김영일 의원, 정일출 의원
- 활동기간
  - 제1차 기간 : 2000.12. 7 ~ 2001. 3. 6 (3개월)
  - 제2차 기간 : 2001. 3. 7 ~ 4.30 (55 일)

### 3. 확인점검 대상

-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23개 담당관 및 과

### 4. 추진방향

- 세목별 월별 징수계획 수립여부 및 타당성·적정성 파악
- 징수부의 정리실태 및 관리운영실태 전반 확인점검
-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및 체납실태 파악
- 세외수입 관리방안 강구 및 대책수립

## 5. 현장활동 운영체제

위원 3인 2개반으로 확인·점검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 6. 위원회 운영(활동) 경과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0.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li> <li>- 발의자 : 정혜연 의원외 6인</li> </ul>	
200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li> <li>- 위원장 : 정혜연위원</li> <li>- 간 사 : 김대봉위원</li> </ul>	
2000.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li> </ul>	
2001.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채택</li> </ul>	
2001.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 세외수입 추진현황 보고 청취 (10개부서)</li> <li>-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li> </ul>	
2001.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 세외수입 추진현황 보고 청취 청취 (4개부서)</li> <li>-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li> </ul>	
2001.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 세외수입 추진현황 보고 청취 청취 (9개부서)</li> <li>-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보건행정과</li> </ul>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1. 3. 6	-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계획서 채택	
2001. 3.15	-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6개부서) - 감사담당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2001. 3.16	-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4부서)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2001. 3.19	-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4개부서) -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2001. 3.20	-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5개부서) -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2001. 3.21	- 부서별 관리실태 확인점검 (4개부서) -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01. 4.25	-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	

## 7. 운영결과

-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 11개부서 12건
- 건의사항 : 5개부서 6건, 각부서공통 1건
- 수렴사례 : 2개부서 3건

## 8.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가)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감사담당관)

- 체납222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1999	2,100	200	1,900
2000	2,800	1,500	1,300

- 위에서 알수 있듯이 징수율은 제고 되었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관계로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족등을 상대로 소재파악에 힘써 징수율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며, 재산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행정대집행을 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 구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총무과)

- 총무과 주차장관리운영대장과 세무2과의 징수보고서의 구청주차장 사용료 비교 결과 120건 123,000원의 차액 발생하였음
- 확인결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시 회계과목을 주차장 사용료로 발급하여야 하나 체납처분비수입으로 착오발급 하여 차액이 발생 하였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지서 발급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다) 구유재산건물 임대수입(재무과)

- 구 흥제3동 청사의 1,2층은 고창신림농협에 임대하여 임대료 12,969,81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3층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1996. 1월부터 현재까지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라) 부동산등록세 및 취득세 징수 (세무1과)

- 건물매매시 등록세는 납부완료후 등기가 가능하므로 100% 징수가 가능하나 취득세의 경우는 등기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있는 관계로 6%의 취득세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체납현장 독려 및 채권확보, 압류조치 등으로 적극 대처하여 시세징수교부금 징수율 제고에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지적과)

- 체납현황

(단위: 천원)

년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8,400	3,733	3,242	491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목표액대비 조정액이 44.44%에 불과하여 목표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바)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사회복지과)

- 체납현황

(단위: 천원)

년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433,000	164,000	269,000

-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의 징수율이 37.9%로 극히 저조하므로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납부 독려, 압류조치 등으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지역경제과)

- 체납현황

(단위: 천원)

년도	과목명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신지식센타관리비	124,610	108,084	16,526
	신지식센타주차장사용료	39,262	35,783	3,479

- 신지식산업센터 건물 1,533평 및 주차장 700평 84구획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비 징수율 86.7%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율이 91.1%인바 100%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임

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청소행정과)

- 규격봉투판매수수료중 배정실외 2인(총6건 3,723,950원)의 체납은 100% 징수가 당연 하나 체납된 사항으로 완전징수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외상판매가 아닌 현금으로 판매하여야 할 것임.

자) 정화조설치위반 과태료(청소행정과)

- 체납현황

(단위: 천원)

년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6,100	1,300	4,800

- 조정액 대비 징수율이 21.3%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바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차)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주택과)

- 체납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414,476	126,267	288,209

- 체납액 조치내역

- └─ 압    류 : 6건 23,515천원
- └─ 압류예고 : 16건 28,124천원
- └─ 독촉고지 및 자진철거이행독촉 : 216건 236,570천원
- └─ 철    거 : 22건 10,991천원

-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행정대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

## 카) 건축이행강제금 (건축과)

## - 체납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2000	314,910	25,152	289,758

- 조정액 대비 징수율이 8%로 극히 저조한바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를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타)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교통행정과)

-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재사항도 없음
  - 체납과태료는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 납부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기 체납의 원인이 됨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에 대한 홍보등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9. 건의사항

## 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주민자치과)

주민등록 과태료는 주민등록 말소후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구분되는바,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년 2회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문, 구 홈페이지, 구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나) 서대문비씨 카드 홍보(기획예산과)

비씨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938명이 발급받아 그중 408명이 사용하여 총 605,000천 원

을을 사용함으로서 사용금액의 0.1%인 우리구의 2000년도 수수료 수입은 605천원으로서 더욱더 많은 주민이 「서대문비씨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다) 변상금 요율 조정에 관하여(재무과)

- 변상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요율이 주거용인 경우 공시지가의 25/1000로서 비슷한 성격의 도로사용료 경우 5/1000보다 5배 비싸게 부과되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큼
- 위와같은 높은 변상금의 사용요율을 비슷한 성격의 도로사용료 적용요율인 5/1000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등 상급기관에 건의 요망

라)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재무과)

- 변상금 체납시 가산금이 아닌 연체료로 부과되어 장기 체납시 가산금의 경우 77%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연체료는 원금을 초과하여 부과됨으로 납부저항이 우려됨
- 변상금체납자에 대하여 우선 상대적으로 20%가 낮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체납누적 해소방안 강구 요망됨.

마) 가로등 원상복구비에 대하여(토목하수과)

2000년도 가로등 및 가로등시설 원상복구 내용을 보면 총 7건에 9,390천원을 원인자로부터 100%징수하였는 바, 이는 해당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의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하여 사고발생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바) 보건소 홍보등(보건소)

세외수입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의료대란 기간을 빼고는 보건소 이용 대상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 많은 주민에게 보건소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외수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에 첨부하는 중지대신 인증기를 구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하기 바람.

### 사) 체납액 정리철저(공통)

서대문구청 각과별 체납액 정리에 관하여 사후체납현장독려 및 채권확보, 압류조치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10. 수법사례

### ▣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시행 (도시정비과)

- 발굴 개요: 홍보물인 전단교부는 도로청소 문제로 전면 규제하였으나 신고를 받아 교부토록 하고 도로상 폐기행위를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세입증대액: 총35,000천원  
(민원수수료 10,000천원, 과태료 25,000천원)
- 기대효과: 민원편의증진, 세외수입확충

### ▣ 신규세외수입원 발굴계획(재무과)

-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부과된 토지를 찾아 변상금, 대부료 및 매각실시
- 대상: 구유재산(토지) 총1,000필지
- 기간: 2001. 6. 1. ~ 2002. 12. 31.
- 방법: 현장방문 및 각종 공부를 병행한 조사
- 신규예상수입: 약 50,000 천원

### ▣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액 수입증대(재무과)

- 현황:
  - 1997. 7.2일자로 사업승인되어 시행중인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관사용으로 취득함으로써, 약 2억원의 세외수입 효과 기대

- 취득아파트 표시

(단위: 천원)

아파트명	평형	전용면적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가
연희동 성원아파트	49평	135m <sup>2</sup>	'98.10.24.	103동1901호	286,081

\* 현재시세: 490,000천원(2001.4.13.기준으로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

○ 추진상황

- 건물 취득: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중 위험건물로 판정받은 6동204호 ( $36.36\text{m}^2$ )를 14,904천원으로 보상하고 '95.11.21일자로 협의취득
- 조합원 자격 취득: 취득재산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참여 권유로 조합원 자격 취득
- 관사용 아파트 계약: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98.10.24. 아파트 계약
- 분양가 납부상황: 총 286,081천원중 258,622천원(잔금 27,459천원)
- 입주시기: 2001. 5월 예정

○ 기대효과

- 관사용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총 286,081천원을 투입하여 현시가 490,000천원으로 2억여원의 구세외수입의 증대효과가 기대됨.

\* 구입비용 세부내역(단위: 천원)

$$\text{총 } 286,081 = \text{순수분양가 } 269,733 + \text{건물보상가 } 15,000 + \text{금융비용 } 1,348$$

(별첨)

## ‘2000 西大門區 一般會計稅外收入

### □ 徵收實積 및 展望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정수실적(12.31현재)					결산전망		
	목표 (A)	조정액 (B)	정수액 (C)	진도율 (C/A)	정수율 (C/B)	정수액 (D)	진도율 (D/A)	과부족 (D-A)
총 계	38,356	51,379	47,919	124.4	93.3	48,045	125.3	9,68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757	10,593	10,171	131.1	96.0	10,185	96.1
	재산임대수입	172	180	160	93.0	88.9	172	100.0
	사용료수입	1,338	1,792	1,408	105.2	78.6	1,410	105.4
	수수료수입	2,234	3,156	3,138	140.5	99.4	3,138	140.5
	사업장수입	46	49	49	106.5	100.0	49	106.5
	정수교부금	3,163	3,199	3,199	101.1	100.0	3,199	101.1
	이자수입	804	2,217	2,217	275.7	100.0	2,217	275.4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0,599	40,786	37,748	123.4	92.6	37,860	123.7
	재산매각수입	2,762	4,157	3,378	122.3	81.3	3,378	122.3
	순세계잉여금	23,367	23,367	23,367	100.0	100.0	23,367	100.0
	이월금	726	5,242	5,242	722.0	100.0	5,242	722.0
	융자금수입							
	잡수입	3,448	7,628	5,369	155.7	70.4	5,481	159.0
	부담금							
	과년도수입	296	392	392	132.4	100.0	392	132.4

## □ 前年同期 對比 實績比較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정수실적 (12.31현재)			'99정수실적 (12.31현재)			증 감		
	조정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조정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증감액 (B-D)	증감율 (D-B)/D	
총 계	51,379	47,919	93.3	31,988	30,143	94.2	17,776	59.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0,593	10,171	96.0	9,888	9,432	95.4	739	7.8
	재산임대수입	180	160	88.9	192	192	100.0	△32	△16.7
	사용료수입	1,792	1,408	78.6	1,801	1,378	76.5	30	2.2
	수수료수입	3,156	3,138	99.4	2,779	2,746	98.8	392	14.3
	사업장수입	49	49	100.0	49	49	100.0		
	징수교부금	3,199	3,199	100.0	3,630	3,630	100.0	△431	△11.9
	이자수입	2,217	2,217	100.0	1,437	1,437	100.0	780	54.3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40,786	37,748	92.6	22,100	20,711	93.7	17,037	82.3
	재산매각수입	4,157	3,378	81.3	4,750	4,750	100.0	△1,372	△28.9
	순세계잉여금	23,367	23,367	100.0	11,240	11,240	100.0	12,127	107.9
	이월금	5,242	5,242	100.0	3	3	100.0	5,239	177.6
	융자금수입								
	잡수입	7,629	5,369	70.4	5,668	4,279	75.5	1,090	25.5
	부담금				44	44	100.0	△44	
	과년도수입	392	392	100.0	395	395	100.0	△3	△0.8

## 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1. 운영목적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시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등 자연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폭발등 각종재난을 예방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

- 위원회 명칭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7 인
  - 위원장 : 조재구 의원
  - 간 사 : 우유근 의원
  - 위 원 : 김정현 의원, 정일출 의원, 최용완 의원, 유규상 의원, 한한열 의원
- 활동기간
  - 제1차 기간 : 2001. 2.21 ~ 2001. 8.20 (6개월)

### 3. 확인점검 대상

- 공사장, 옹벽, 절개지, 다중시설등 위험예상지역

### 4. 추진방향

- 해빙기를 대비한 축대 등 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의 강구
- 풍수해등 자연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등 재난의 사전·사후관리 체계 제고
- 시장,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 재난 사전대책 강구
- 기타 재난관리실태 조사

## 5. 현장활동 운영체제

위원 6인 1개반 합동으로 확인·점검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 6. 위원회 운영(활동) 경과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1. 2.13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 발의자 : 우유근의원와 9인	
2001. 2.21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2001. 2.21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 위원장 : 조재구 의원 - 간 사 : 우유근 의원	
2001. 2.27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	
2001. 3.12	- 재해대책 관련부서 관련현황 업무보고 청취 - 감사담당관, 토목하수과, 지역경제과	
2001. 3.13	- 재해대책 관련부서 관련현황 업무보고 청취 - 주택과, 주택개량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2001. 3.14	- 재해대책 관련부서 관련현황 업무보고 청취 -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2001. 3.26	- 재해대책 현장활동 - 위험예상지역 현장점검 : 5개동 11개소	
2001. 3.27	- 재해대책 현장활동 - 위험예상지역 현장점검 : 5개동 7개소	
2001. 8.17	- 수해피해지역 현황 및 복구상황 보고·청취 - 토목하수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행정과 -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	

## 7. 운영결과

-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 11개부서 12건
- 건의사항 : 5개부서 6건, 각부서공통 1건
- 수범사례 : 2개부서 3건

## □ 운영결과 세부내역

연번	대상	현황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홍은3동산26-170 일대 (배수지공사현장)	공사차량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과 공사장 소음 및 토사유실의 위험 잔존	- 공사차량 출입시 안전운행 대책 강구 - 소음 및 분진방지 대책 강구 - 공사현장 토사유실방지 시설 설치 요망
2	홍은3동산11-96 (탑빌라 뒤)	대지경계 옹벽에 균열 (H4.5m×L20m)이 있어 붕괴의 우려가 있음	옹벽배면부 균열로 인한 우기시 붕 괴우려가 있는 만큼 옹벽변위측정기의 정기적인 계측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요망
3	홍은3동201-1 (스위스그랜드 호텔앞)	무근 콘크리트의 노후한 구조물로 조속한 보수요망	무근 콘크리트로 구축된 구조물로 우기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 한 보수가 있어야 할 것임
4	홍제3동산1-100 (금강빌라~ 관음사)	- 급경사의 암반절개지 로 낙석발생등 위험요소 가 있음	- 9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낙석발생시 인근 주택 7동주 민의 위험요소가 큰 만큼 토지관리 청에 안전조치를 촉구하여 하루빨 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임
5	홍제동9-81 (개미마을)	- 주택과 주택사이의 절개사면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낙석발생등 위험요소가 있음	- 9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낙석발생시 인근 주택 7동주 민의 위험요소가 큰 만큼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임
6	복가좌동 136-150	벽체균열등 건물건체가 노후하여 건물붕괴의 위험요소가 있음	-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노후화가 심한 건축물로 공가인 상태이나 건 물 붕괴시 인근 주민의 사고 위협 이 있는 만큼 조속히 철거 또는 보 수 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연번	대상	현황	조치하여야 할 사항
7	북가좌동 144-254	담장의 기울어 짐이 심하여 붕괴로 위협요소가 있음	이곳은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인 만큼 우선 주민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개보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임
8	남가좌동 216-36,42	주택과 주택사이의 담장의 균 열이 심함	- 담장의 기울어짐이 심하여 붕괴로 인한 재난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임
9	북아현2동 236-50	- 축대위의 낡은 무허가 건물 로 벽체에 균열이 있음	축대위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시 인접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 으므로 보수등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임
10	북아현2동 236-53	- 축대위의 낡은 무허가 건물 로 벽체에 균열이 있음	대문 기둥과 축대위 담장일부가 붕 괴되어 간단한 보수를 한상태이나 건 물균열이 있어 보수등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11	연희3동 341	- 콘크리트로 구축된 용벽으로 상하연결부위가 불량함	이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자칫 대형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곳인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12	연희1동 413-15	- 철근콘크리트로 구축 된 용 벽으로 배수구 미비	철근 콘크리트로 구축된 구조물로 용벽의 배수구가 막힌곳이 많아 조 속히 보수하여야 할 것임
13	봉원동51-1 신촌동24-11	- 하천을 복개한 지상에 건물 이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범람할 우려가 있음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하천 복개하 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임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 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1	재난 및 재해의 예상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개인이 부담하여 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비용등의 부족을 이유로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관공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적기에 보수를 하지못하여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위험 시설물을 보수함에 있어 보수비를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는 이해와 설득으로 보수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이나 장비, 인력등으로 복구가 가능하나, 하천이나 산사태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해대책 기금을 지원 받아 복구를 하는 설정으로 예산 확정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는 구 자체 복구장비 확보는 물론 재해복구비의 충분한 확보등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임.

## ▣ 건의사항

- 관내 백화점, 재래시장등 다중집합장소는 재난 발생시 많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자체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재난 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거 재난·재해 발생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연구검토하여 매년 나타나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라. 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 1. 운영목적

안산을 비롯한 관내의 유수한 산들은 민족정기를 함양시키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유적들이 인접해 있고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제공해 주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의 한공간으로서 구에서는 테마공원조성 등 장기계획을 수립,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답고쾌적하며 자연친화적인 서울의 명산으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에 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훼손 상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관계기관의 보다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제고하고, 전주민이 관내산의 환경보전생활화와 산가꾸기에 참여·협조하는 실천계기를 마련하는 등 관내산들의 환경보존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

#### □ 위원회 구성

- 명 칭 :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 위원수 : 7 인
- 위원장 : 전성장 의원
- 간 사 : 우유근 의원
- 위 원 : 최용완 의원, 이문복 의원, 김화형 의원, 김대봉 의원, 최태중 의원

#### □ 활동기간

- 2001. 2. 1. ~ 2001. 4.30 (3개월)

### 3. 추진방향

- 산의 환경 훼손실태를 명확히 파악, 훼손요인 근절위한 대책 강구
- 훼손환경 복구를 위한 방안 강구
-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행정력 제고
- 산 환경보존 및 가꾸기의 전주민 참여·협조 위한 홍보체계 마련

#### 4. 현장활동 운영체제

위원 6인 1개반, 합동으로 확인·점검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 5. 주요 활동분야 및 확인점검 대상

- 산주둔 군부대 사용시설 및 산이용 현황, 실태 - 5개 부대
  - 부대시설에 의한 산훼손여부
  - 잔반처리 실태
  - 기타 생활쓰레기 및 부대쓰레기 처리 실태  
분뇨처리 실태 및 정화조 시설
  - 산보호 운동 전개 여부 등
  
- 산내 시설물
  - 배드민턴장 - 30 개소
    - 규모 및 관리실태
    - 이용자 현황
    - 이용자의 쓰레기 처리 실태
    - 관리감독 실태
    - 안산환경보존을 위한 활동현황
  - 체육시설 - 1,107 개 시설
    - 시설별 관리실태
    - 이용 실태
    - 각종 쓰레기 처리 실태
    - 임의 인공구조물 현황 및 구조물에 의한 산훼손 실태
    - 이용자들의 산환경보존을 위한 활동현황
  - 약수터 - 34 개소
    - 이용자 현황
    - 수질오염 정도 및 원인
    - 관리실태

- 쓰레기 처리 실태

- 봉수대. 전망대 시설관리 실태 및 주변환경관리 실태
- 자연학습장 관리실태
- 산 순환도로변 정비 · 관리실태
- 사찰 주변 환경 생태 현황 및 환경보존 실태
- 산의 수목 및 조류 보존을 위한 관리실태
- 식수 관리실태
- 각종 식수 및 조류현황과 관리실태

□ 기타 사항

- 서대문구환경현장에 따른 환경보전 시책추진 상황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대 구민홍보 실태

## 6. 위원회운영(활동)경과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0.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화형 의원 외 5인 발의</li> </ul> </li> </ul>	
2000.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li> </ul> </li> <li>○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li> </ul> </li> </ul>	
2000.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li> </ul> </li> </ul>	
2000.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li> </ul> </li> </ul>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1. 1.19 ~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산환경훼손행위 주민신고』 독려용 현수막 제작, 게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 앞 게시대 및 산 주진입로 등, 총 10개소에 게첨</li> <li>- 주민신고 접수 : 총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철거 및 인공구조물 철거 요청 등</li> </ul> </li> </ul> </li> </ul>	
2001.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추진일정 작성,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대상 산별, 군부대별 일정 작성</li> </ul> </li> </ul> </li> </ul>	
2001. 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활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문 4개사</li> <li>- 서서울 케이블 TV</li> <li>- 구소식지</li> <li>- 동사무소 게시판</li> </ul> </li> </ul>	
2001.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왕산 현장 확인 · 점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li> </ul> </li> </ul>	
2001.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산 현장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li> </ul> </li> </ul>	
200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련산 현장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li> </ul> </li> </ul>	
2001. 3.22 2001. 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 현장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li> </ul> </li> </ul>	

월 일	추 진 (활동) 내 역	비고
2001.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산 군부대 방문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특별위원회 회의</li> <li>- 수도방위사령부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방공단 인왕산 진지</li> <li>② 궁동산 104고지</li> <li>③ 안산진지</li> </ul> </li> </ul> </li> </ul>	
2001.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산 군부대 방문 확인 ·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특별위원회 회의</li> <li>-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 1개소</li> </ul> </li> </ul>	
2001.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답변·강평 및 운영결과보고서안 작성,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특별위원회 회의</li> <li>1) 질의답변 : 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장</li> <li>2)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사항 : 40 건</li> <li>· 건의 및 기타사항 : 12 건</li> <li>· 우수·장려사항 : 6 건</li> </ul> </li> </ul> </li> </ul>	

## 7. 운영(확인·점검)결과

(단위 : 건)

산.부대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기타사항	우수·장려사항
계		58	40	12	6
관 내 산	안 산	11	11	-	-
	인 왕 산	9	8	-	1
	북 한 산	14	13	1	-
	백 련 산	7	2	5	-
	궁 동 산	1	1	-	-
	공 통	5	-	5	-
군 부 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안산진지	1	-	1	-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인왕산진지	4	-	-	4
	수도방위사령부 궁동산진지 (104고지)	-	-	-	-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	6	5	-	1

## 8. 확인점검 세부내역

## 가) 시정 및 요구사항

산 별	확인사항	시 정 및 요 구 사 항
안 산	배드민턴장에 의한 산 훼손 실태	<p>1. 옥천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과 탈의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산의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옆 계곡에 자동차 폐타이어 9개와 건축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바 천막과 탈의실을 철거하고 폐타이어 및 건축폐자재를 수거·처리 요망.</p> <p>2. 옥천배드민턴장의 옆 산사면 축대 일부를 임의로 허물고 굴토하였다가 돌과 흙으로 복구하여 놓았으나, 폭우 시 산사태가 우려될 만큼 허술한 바 완전하게 원상복구 요망.</p> <p>3. 장수천배드민턴장 옆 도랑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바 도랑보수와 주변 정비 요망.</p> <p>4. 봉구천 배드민턴장 4면에 대형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고 취사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바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취사 행위는 완전히 근절되도록 조치 요망.</p> <p>5. 안산천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바 철거 요망.</p> <p>6. 안산천 배드민턴장의 복토를 위해 옆 산사면을 굴토하여 산을 훼손하였는 바 산사면을 원상복구하고 굴토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망.</p> <p>7. 창천수배드민턴장 4면에 대형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산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천막 철거조치 요망.</p> <p>8. 연홍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철거 요망.</p>

산 별	확인사항	시 정 및 요구 사 항
안 산	약수터이용 현황 및 관리 실태	9. 봉구천약수터에서는 일부주민들이 임의로 약수터화원체를 실시하여 약수터 이용에 있어서 회원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비회원 일반인들의 약수터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강요하는 안내문까지 약수터 벽에 써놓아 이용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함.
	팔각정 주변 훼손실태	10. 팔각정 서쪽 아래에 기왓장이 다량 방치되어 있는 바, 수거처리하여 팔각정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요망.  11. 팔각정 남쪽 능선에 폐 고암선철탑기초석 4개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제거 요망.
인왕산	배드민턴장에 의한 산훼손 실태	12. 용천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산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취사시설 및 기타 부수시설을 설치하여 산을 훼손하고 있는 바. 바람막이 천막과 취사시설 및 도구 등 기타 부수시설 등을 철거 요망.
		13. 해발 338m의 높이에 위치한 큰절 위 큰바위약수터 옆에 산사면을 불법으로 굴토하여 미신고 배드민턴장 부지를 무단으로 조성함에 따라 산 훼손은 물론 장마 시 산사태까지 야기 시킬 수 있는 바. 원상복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망.
		14. 인왕약수터 주변 3개 배드민턴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배드민턴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정비 등 철저한 관리 요망.

산 별	확인사항	시 정 및 요 구 사 항
인왕산	약수터관리 및 주변 산 훼손 실태	<p>15. 용천약수터와 큰절골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약수 오염과 산환경 오염이 우려되며 산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바. 약수터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약수오염, 주변환경의 미관저해와 산 훼손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요망.</p> <p>16. 큰절골 큰바위 약수터는 미 등록된 약수터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는 청소도구보관함을 설치하여 관리도 미흡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등록관리 또는 폐쇄토록하고, 주변가설물을 해발 338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철거 요망.</p>
		<p>17. 인왕약수터 물은 야산계곡의 물로서 약수물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약수터 관리가 미흡하여 물이 오염되어 있는 바. 폐쇄조치 요망.</p>
	인공구조물에 의한 산 훼손 및 관리실태	<p>18. 개미마을 홍제동 산1-100에 3개의 천막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아파트 옆에는 1개의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산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홍심약수터 주변의 콘테이너박스 및 천막은 철거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청구아파트 옆(큰절 초입변)의 콘테이너박스는 위치상으로도 별 문제점이 없고 이를 공공근로자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시설물임으로 그대로 두되,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콘테이너박스의 제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 요망.</p>
	산 계곡 집수정 관리실태	<p>19. 홍제3동 “현대아파트” 뒤 집수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집수정에 낙엽이 쌓여 있는 바 홍수시 계곡물이 범람하여 아파트로 유입되니, 집수정에 대한 청소 등 철저한 관리 요망</p>

산 별	확인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북한산	산 청손실태	20. 홍은2동 극동아파트 101동 옆 산입구변에 각종 생활쓰레기 적치되어 있으니,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요망.
		21. 홍은2동 극동아파트 뒤 계곡의 수로가 파손되어 있는 바,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요망
		22. 홍은 2동 극동아파트 뒷산에 15년 생 아카시아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고사목 및 쓰러진 나무 등 정리 요망.
	약수터 및 주변 관리실태	23. 육모정약수터의 “약수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이 소실되어 있는 바,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유지도록 조치요망.
		24. 육모정약수터에 배수로가 없어 물이 배트민턴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바, 배수로 시설 요망.
		25. 육모정약수터 축대 밑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니, 폐기물 수거 처리 요망.
	산 입구변 청손실태	26. 육모정약수터 옆 산계곡 배수로에 고사목 등이 방치되어 있으니, 배수로상의 고사목 등 잡목 정비 요망.
		27. 7번 마을버스 종점변의 침사지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바, 쓰레기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 요망.
		28. 7번 마을버스종점 주변에 폐타이어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니, 깨끗하게 정비 요망.
		29. 7번 마을버스종점 뒤 50m지점의 사각정자 옆에 다량의 쓰레기가 투기, 방치되어 있으니,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쓰레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요망.
		30. 홍은2동 호박골약수터 30m 뒤에 수로집수정이 파손되어 있는 바, 보수정비 요망.

산 별	확인사항	시 정 및 요 구 사 항
북한산	배드민턴장에 의한 산훼손 실태	<p>31. 호박골약수터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바, 바람막이 천막 철거 요망.</p> <p>32. 홍록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바, 바람막이 천막 철거 요망.</p>
백련산	배드민턴장에 의한 산훼손 실태	<p>33. 장수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바, 철거요망.</p> <p>34. 서부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바, 철거요망.</p>
궁동산	배드민턴장의 산훼손 실태	35. 연희1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천막 설치되어 있는 바, 철거요망.
국군통신 사령부 안산송신소	산훼손 및 각종 쓰레기 및 분뇨 처리실태	<p>36. 군부대입구로의 계단과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우기시 표면의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높고 또한 폭우 시 일부 산사태와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계단과 배수로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미관을 고려해서 시멘트 등으로 정비하여 우기시에 토사소실 및 산사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요망.</p> <p>37. 봉원사쪽 산입구에서 군부대방향으로 현재 사용치 않는 폐전선이 등산로를 따라 나무위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폐전선을 수거, 처리 요망.</p> <p>38. 음식물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분리, 배출하고 용산구청에서 수거처리함으로 무단투기는 근절된 것으로 판단되나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그대로 산으로 방출되고 있어 산과 산 아래 약수터의 약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산 환경보존과 약수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처리하거나 규정 하수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토록 시정 요망</p>

군부대별	확인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국군통신 사령부 안산송신소	분뇨처리실태 및 산 주변 정리실태	<p>39. 정화조의 기능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완벽한 정화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p> <p>40. 봉구천 위쪽, 군부대용 배수지 주변의 관리가 미흡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주변 및 시설을 산뜻하 게 정비하고 안전망도 미관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기 바 람.</p>
수도방위 사령부  1) 수도사령부 방공단 인왕산진지  2) 방공단 궁동산 104고지  3) 방공단 안산진지	산훼손 및 각종쓰레기 및 분뇨처리실태	<p>※ 지자체 규정대로 쓰레기를 배출, 수거처리함으로써 산 에 무단투기 및 매립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p> <p>※ 5개 정화조중 배관 및 탱크(수거차량 진입위치까지의 배관 및 분뇨저장 탱크)가 아직 미설치된 1개 화장실도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착공하여 금년중에 모 두 완공할 계획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음.</p> <p>※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쓰레기를 지자체 지정쓰레기봉투에 의하여 완전분리 배출(지자체수거)하 고 있어 무단 매립 등의 실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바.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였음.</p>

## 나) 건의사항

산 별	건 명	건의사항
북 한 산	팔각정 설치	1. 홍은2동 쪽 북한산의 장수바위가 있는 곳은 노인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 드는 휴식처이나 앉아 쉴만한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바, 팔각정 등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기 바람.
수도방위사령부	군부대 주변 식수지원	2. 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인왕산 진지를 비롯한 각 진지의 인공구조물이 산 정상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산의 경관 유지,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해 식재할 나무를 지원하여 주기 바람.
백련산	채벌나무 재활용 강구	3.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공할 계획인 “가좌배수지 건설공사장”(홍은3동 산26-170일대)내에서 채벌된 소나무 등을 가로수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요망.
	배수지 상면의 주민휴식공간 조성 철저	4. 배수지 상면을 주민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 철저 요망.
	공사장 주변 주민안전시설 시공 철저	5. 공사장 안전시설 확보 안전망 등 주민 안전 확보 위한 안전시설 철저 요망.
	주민자율 에어로빅 장소 확보방안강구	6. 백련약수터 전(산입구변)의 기존 에어로빅장소에 가좌배수지 공사장에서 벌채한 나무를 식재할 계획임에 따라 에어로빅장소 소멸 가능성과 이용주민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아침 에어로빅 회원(주민)들을 위해 기존장소를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계속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약수터 주변정비	7. 약수터 및 체육시설 주변 관리는 양호하나, 약수터주변의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산 환경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정리정돈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관리 요망.

산 별	건 명	건의사항
	산녹화 조성 및 일부 등산로 폐쇄조치	<p>8. 관내 산의 토질, 기후 등을 고려하여 산에 대한 중장기 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나무를 식재토록하고, 식재한 나무는 고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요망.</p> <p>9. 관내 산에 등산로가 너무 많아 산 훼손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등산로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산의 환경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공 통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이전	10. 각 산내의 배드민턴장이 산의 5부 능선에서 8부 능선까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의 경관을 가일층 저해하고 있고, 산 훼손행위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으로 한정된 배드민턴 동호회 등 특정동호회 회원들에 의한 바람직 스럽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어 일반 등산 주민들의 지탄이 날로 더 해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 산 아래쪽에 종합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산중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이전·설치함으로써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고 등산이 어려운 주민들을 비롯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배드민턴장등 체육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인공구조물 정비	11. 약수터, 배드민턴장의 기존 부수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구조물의 구조와 외벽색채를 산과 조화가 되도록 정비(도색) 요망.
	약수터 이용 지도관리	12. 많은 약수터가 회원제를 실시하여 비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을 하는 등 횡포가 날로 심각한 바 일반 주민들도 제한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지도관리 요망.

## 다) 우수·장려사항

군부대별	확인사항	우 수 장 려 사 항
인왕산	약수터 및 산시설물 관리실태	<p>1. 무궁화동산, 옥동약수터, 홍인약수터 등이 관리상태가 양호함.</p>
국군통신 사령부 안산송신 소	산환경보존 위한 관심 및 활동 실태	<p>2.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산 훼손방지와 산 사랑고취를 위해 군부대 자발적으로 월 1회이상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산 환경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p>
수도방위 사령부	산 환경보존 위한 관심 및 활동실태	<p>3. 병사들의 산환경보존을 위한 의식전환으로 각종 쓰레기를 지자체(종로구청)지정봉투에 의거 완전 분리·배출함으로써 산에 무단투기와 매립하는 등의 산 훼손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음.</p> <p>4. 기존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정화된 오수 등도 자갈, 모래, 숯 등을 이용한 필터로 재 정화, 배출하고 수시로 오염도를 측정하여 정화도를 높이는 등 산의 오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p> <p>5. 군지휘관들을 비롯하여 사병에 이르기 까지 산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산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p> <p>6. 산의 자연녹화를 위해 식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중임.</p>

## 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

I. 구정질문

II. 행정사무감사

III. 민원처리

IV. 기타의정활동





## 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

### I. 구정질문

#### □ 의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처리상황과 장래계획을 물어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케 함으로 자치단체의 바른 구정실현을 유도하고, 정치적 자세와 책임을 명확히 부담시켜 정책을 변경 또는 대체케 하거나 시정시키는 등으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다.

#### □ 현황 ( 28인 72건)

구분 회기 ( ): 질문일자	질문 의원수	질문 건수	부서별 해당 질문현황							
			감사 담당관	행정 관리국	재무국	생활 복지국	도시 관리국	건설 교통국	보건소	
계	28	72	1	21	1	12	10	24	3	
제81회 정례회 (2000.12. 6 ~ 12. 7)	10	16	-	6		2	3	5	-	
제83회 임시회 (2000. 3.29 ~ 3.31)	9	30		9		4	3	13	1-	
제85회 정례회 (2000. 7. 5 ~ 7. 6)	9	26	1	6	1	6	4	6	2	

## II.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1. 6. 29 (금) 15:00
- 장 소 : 의회 제1회의실

#### 나. 감사대상 : 의회사무국

- 사무범위 :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행정 사무 전반

#### 다.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1, 간사 1, 위원 8인)

#### 라. 세부추진사항

##### 1. 감사반 편성

- 총괄 : 이 진 수 위원장 (간사 : 유규상 의원)

구분 반별	감 사 위 원	대 상	사 무 보 조	비고
제1반	반장: 전성장 반원: 이문복, 정혜연, 유규상	의정담당업무	의사담당주사 박 천 기 직 원 김 찬 종	
제2반	반장: 정일출 반원: 한한열, 최용완, 김화형	의사담당업무 의안담당업무	장 혜 경 성 기 주	

## 마. 감사결과

- 총 12건
    - 시정사항 : 5건
    - 견의사항 : 6건
    - 우수사항 : 1건

## 2. 행정관리위원회

###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 기 간 : 2001. 6. 26 ~ 7. 2 (7 일간)  
▣ 장 소 : 구청 대회의실

#### 나.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범위



## 다 각사워워회 구성

- ▣ 감사위원회 :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1, 감사 1, 위원 8인

### 라. 세부추진사항

#### 1) 감사반 편성

□ 총괄 : 최 광 진 위원장 (간사 : 한한열 의원)

구 분	감사위원	대상 부서		사무보조	비고
		局	課		
1 반	반장 : 이진수 의원 위원 : 한한열 의원 최태중 의원	행정관리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의사담당주사 박 천 기 직 원	
2 반	반장 : 정혜연 의원 위원 : 이기봉 의원 유규상 의원	재무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김 찬 종 조 규 은 장 혜 경	
3 반	반장 : 김정현 의원 위원 : 김종철 의원 조재구 의원	부구청장직속 보건소	감사담당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신 성 윤	

□ 동별 감사반

구 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1 반	정혜연, 한한열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2 반	이기봉, 유규상	홍제4동, 홍은1동, 홍은2동
3 반	이진수, 최태중	홍은3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4 반	조재구, 김종철, 김정현	북가좌1동, 북가좌2동

## 2) 감사실시일정

차수	감사 일자	감 사 실 시 내 역	감사장소
1일	2001. 6.26. (화)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감사실시	
2일	2001. 6.27. (수)	반별.개별감사실시	
3일	2001. 6.28. (목)	"	구 청
4일	2001. 6.29. (금)	"	회의실
5일	2001. 6.30. (토)	"	
6일	2001. 7. 1. (일)	휴 회	
7일	2001. 7. 2. (월)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마. 감사결과

( ) : 건수

구 분	계	시정 및 요구사항	건의.기타사항	우수·장려사항
계	59	15	36	8
감사담당관	2	1	1	
행정관리국	22	6	15	1
재 무 국	12	2	7	3
보 건 소	12	5	6	1
11개동	11	1	7	3

### 3. 복지건설위원회

####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1. 6. 26 ~ 7. 2 (7 일간)
- 장 소 : 구청 지하상황실

#### 나.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범위

- 대상부서 : 3 국 12과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 도시관리국 :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 건설교통국 :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사무범위 :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행정 사무 전반

#### 다.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1, 간사 1, 위원 8인

#### 라. 세부추진사항

##### 1) 감사반 편성

- 총괄 : 허준구 위원장 (간사 : 김화형 의원)

구 분	감사위원	대상부서		사무보조	비고
		局	課		
1 반	반장 : 정일출 의원 위원 : 이문복 의원 김화형 의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의안담당주사 권중은 직원	
2 반	반장 : 전성장 의원 위원 : 최용완 의원 김대봉 의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김길록 이영순	
3 반	반장 : 김영일 의원 위원 : 기창표 의원 우유근 의원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성기주	

## 2) 감사실시일정

차수	감사일자	감사실시내역	감사장소
1일	2001. 6.26. (화)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감사실시	
2일	2001. 6.27. (수)	반별·개별감사실시	
3일	2001. 6.28. (목)	-	
4일	2001. 6.29. (금)	-	구청회의실
5일	2001. 6.30. (토)	-	
6일	2001. 7. 1. (일)	휴회	
7일	2001. 7. 2. (월)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마. 감사결과

( ) : 건수

구분	계	시정 및 요구사항	건의·기타사항	우수·장려사항
계	75	25	39	11
생활복지국	33	사회복지과 (4) 환경위생과 (2)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5) 환경위생과 (6) 지역경제과 (4) 청소행정과 (6)	환경위생과 (1) 지역경제과 (2) 청소행정과 (1)
도시관리국	22	주택과 (3) 주택개량과 (1) 도시정비과 (2)	주택과 (2) 주택개량과 (2) 도시정비과 (5) 건축과 (1)	주택과 (2) 주택개량과 (1) 도시정비과 (2) 건축과 (1)
건설교통국	16	토목하수과 (3) 공원녹지과 (2) 교통행정과 (1) 교통지도과 (2)	토목하수과 (4) 교통행정과 (2) 교통지도과 (1)	교통행정과 (1)
공통	4	각과 (2)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1) 청소행정과	각과 (1)	

### III. 민원처리

#### ○ 청 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권리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된다.

#### ○ 진 정

진정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진정서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할 권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 ○ 처리 현황

총 계	청 원			진 정			
	소 계	처 리	부 결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28	3	.	3.	25	25		

## IV. 기타의정활동

### 1. 의원세미나

기 간	장 소	목 적	강 사	참석인원
2000.11.23 ~ 2000.11. 25 (2박3일)	* 당진군의회 * 단양군의회	* 정례회 대비 타시도 지방의회 운영 실태 파악등을 통해 의회운영의 활 성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여	* 비교시찰	(총 23명) *의원 18명 *직원 5명
2001.4.11 ~ 2001.4.14 (3박4일)	* 신안군의회 * 보성군의회	"	"	(총 23명) *의원 17명 *직원 6명
2001.6.13 ~ 2001.6.15 (2박3일)	* 제 주 (오리엔탈호텔)	* 정례회 대비 특별연수기관에서 실 시하는 의원세미나를 개최 전문지 식함양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효 율적인 회의운영에 기여	국회의정연수국 김인철 교수 국회사무처 윤진훈 서기관	(총 10명) *의원 7명 *직원 3명

### 2. 제3대 서대문구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0. 7. 28(금) 12: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여인원 : 62명(전의원, 의원부부, 지역신문기자 등)
- 내 용 : 지난 의정활동의 회고로 지방자치발전 및 활기찬 의회상 정립

### 3.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기 간 : 2000. 11. 6 ~ 12. 23
- 대 상 : 17개동
- 참여인원 : 의장단, 각상임위원장, 지역구의원, 각동 직능단체장 및 주민
- 내 용 : 의정활동홍보, 구민의 민원사항 및 의견수렴(195건)등

#### 4. 사회복지시설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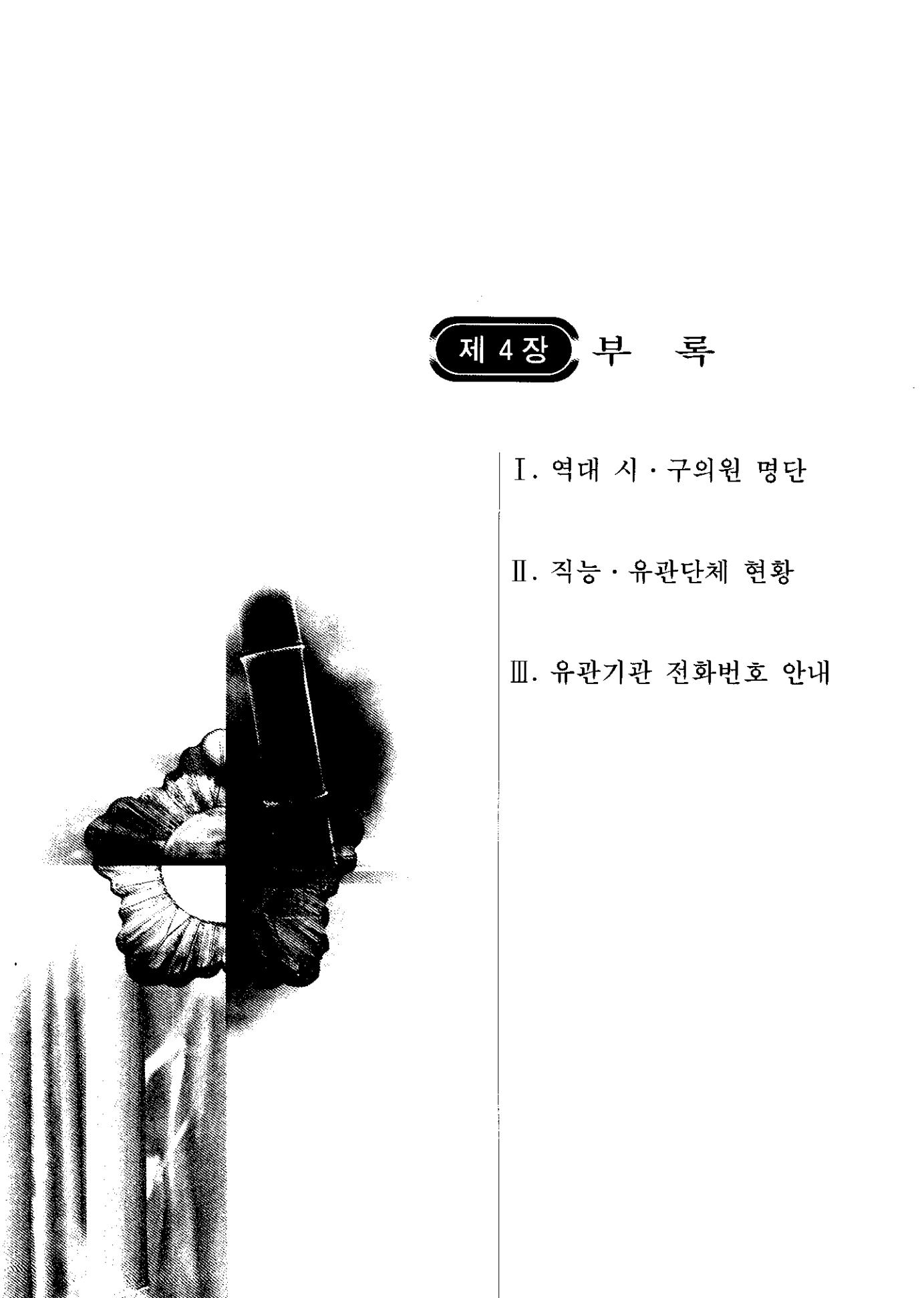
- 일 시 : 2000. 12. 23
- 대 상 : 애란원(대신동소재, 미혼모 관리)
- 참여인원 : 5명(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 내 용 :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50만원 상당)

#### 5.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참여

- 일 시 : 2001. 1. 17(수) 10:00
- 장 소 : 구청광장
- 모 금 액 : 쌀 10가마(945,000원 상당)
- 참석인원 : 5명(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 6. 지역언론사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1. 4. 26(목) 18:30
- 장 소 : 놀부집
- 참석인원 : 19명(의장단, 각 상임위원장·간사, 각 지역언론사 대표 등)



## 제 4 장 부 록

I. 역대 시 · 구의원 명단

II. 직능 · 유관단체 현황

III.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



## I. 역대 시·구의원 명단

### 가. 시의원 명단

- 3대 시의원 명단 (임기: '91. 7. 1~'95. 6. 30)

( '95. 6. 30 현재 )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충정, 북아현1·2·3동, 대신동)	이 종석	건설위원회
2	제2선거구(창천, 연희 1·2·3동)	박 상동	내무위원회
3	제3선거구(천연, 현저, 홍제1·2·4동)	김 석판	도시정비위원회
4	제4선거구(홍제3, 홍은1·2동)	문 일권	서울시의회부의장 내무위원회
5	제5선거구(홍은3, 남가좌2동)	김 순애	도시정비위원회
6	제6선거구(남가좌1, 북가좌1·2동)	한 서규	교통위원회

- 4대 시의원 명단 (임기: '95. 7. 1~'98. 6. 30)

( '98. 6. 30 현재 )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충정, 북아현1·2·3동, 대신동)	문 석진	내무위원회
2	제2선거구(창천, 연희 1·2·3동)	이 강옥	운영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3	제3선거구(천연, 현저, 홍제1·2·4동)	박 정구	수자원관리위원회
4	제4선거구(홍제3, 홍은1·2동)	김 옥원	내무위원회
5	제5선거구(홍은3, 남가좌2동)	김 평락	수자원관리위원회
6	제6선거구(남가좌1, 북가좌1·2동)	신 경식	내무위원회
7	비례대표	김 방임	도시정비위원회

- 5대 시의원 명단 (임기: '98. 7. 1~2002. 6. 30)

( 2001. 7. 1 현재 )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 (충정, 천연, 현저, 북아현1·2·3동, 대신, 창천동)	주 세만	교통위원회
2	제2선거구(연희 1·2·3, 홍제1·2·4동)	이 강옥	건설위원회
3	제3선거구(홍제3, 홍은1·2·3동)	김 옥원	환경수자원위원회
4	제4선거구(남가좌1·2, 북가좌1·2동)	신 경식	재정경제위원회

## 나. 구의원 명단

○초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1. 4. 15 ~ '95. 6. 30)

('95. 6. 30 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동 명
1	의 장	정 전 촌	창천동 68-55	창 천 동
2	의 장	김 은 천	홍은 3동 206-4	홍 은 3 동
3	부 의 장	좌 두 행	연희2동 85-6	연 희 2 동
4	의 원	송 영 우	충정로동 3가 3-18	충 정 로 동
5	"	전 재 환	냉천동 65	천 연 동
6	"	이 봉 수	현저동 101-107	현 저 동
7	"	조 민 행	북아현 1동 114-1	북 아 현 1 동
8	"	윤 익 수	북아현 2동 251-6	북 아 현 2 동
9	"	전 성 장	북아현 3동 1-1027	북 아 현 3 동
10	"	강 석 종	대현동 56-126	대 신 동
11	"	김 정 현	연희 1동 542-45	연 희 1 동
12	"	박 노 현	연희 3동 304-2	연 희 3 동
13	"	조 갑 현	홍제 1동 334-87	홍 제 1 동
14	"	이 문 복	홍제 2동 322-2	홍 제 2 동
15	"	김 영 일	홍제 3동 260-43	홍 제 3 동
16	"	김 종 채	홍제 3동 287-105	홍 제 3 동
17	"	정 화 진	홍제 4동 103	홍 제 4 동
18	"	최 용 완	홍은 1동 71-700	홍 은 1 동
19	"	정 병 팔	홍은 2동 9-63	홍 은 2 동
20	"	구 자 억	홍은 3동 413-24	홍 은 3 동
21	"	정 일 출	남가좌 1동 152-39	남 가 좌 1 동
22	"	박 정 래	남가좌 1동 295-13	남 가 좌 1 동
23	"	임 재 선	남가좌 2동 76-57	남 가 좌 2 동
24	"	김 원 주	남가좌 2동 73-219	남 가 좌 2 동
25	"	정 혁 주	북가좌 1동 144-466	북 가 좌 1 동
26	"	김 평 락	북가좌 1동 116-7	북 가 좌 1 동
27	"	정 일 수	북가좌 2동 310-21	북 가 좌 2 동
28	"	곽 재 만	북가좌 2동 75-127	북 가 좌 2 동

## ○ 2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5. 7. 1~'98. 6. 30)

('95. 6. 30 현재)

연번	직위	성명	주소	동명
1	의장	송영우	충정로동 3가 3-18	충정로동
2	의장	조갑현	홍제동 334-87	홍제1동
3	의장	임재선	남가좌2동 76-57	남가좌2동
4	부의장	김평락	북가좌1동 116-7	북가좌1동
5	부의장	조재구	홍은3동 338-5	홍은3동
6	의원	기창표	옥천동 19	천연동
7	"	김동덕	현저동 1-154	현저동
8	"	이기봉	북아현1동 509	북아현1동
9	"	정현철	북아현2동 159-355(201호)	북아현2동
10	"	전성장	북아현3동 1-1027	북아현3동
11	"	김종섭	대신동 럭키APT 103동 303호	대신동
12	"	김종철	창천동 20-51	창천동
13	"	김정현	연희1동 452-45	연희1동
14	"	정혜연	연희2동 196-1	연희2동
15	"	박노현	연희3동 304-2	연희3동
16	"	이석문	홍제2동 44-18	홍제2동
17	"	김영일	홍제3동 260-43	홍제3동
18	"	정연식	홍제3동 유워하나APT 101동 1309호	홍제3동
19	"	이진수	홍제4동 128-4 환경빌라 B02	홍제4동
20	"	이성배	홍은1동 71-749	홍은1동
21	"	최광진	홍은2동 11-47	홍은2동
22	"	박덕균	홍은2동 8-608	홍은2동
23	"	강석준	홍은3동 274-83	홍은3동
24	"	정일출	남가좌1동 124-228	남가좌1동
25	"	권재일	남가좌1동 155-264	남가좌1동
26	"	홍성덕	남가좌2동 3-79	남가좌2동
27	"	오환인	북가좌1동 421-23	북가좌1동
28	"	허준구	북가좌2동 5-15	북가좌2동
29	"	정일수	북가좌2동 310-20	북가좌2동

## ○ 3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8. 7. 1~2002. 6. 30)

(2001. 6. 30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동 명
1	의 장	김 정 현	연희 1동 542-45	연희 1동
2	의 장	오 환 인	북가좌 1동 421-23	북가좌 1동
3	부 의장	기 창 표	옥천동 19	천연동
4	부 의장	김 종 철	창천동 20-51	창천동
5	의 원	유 규 상	충정로동 2가 185-15 현대⑧706	충정로동
6	"	이 기 봉	북아현 1동 509	북아현 1동
7	"	김 화 형	북아현 2동 174-1	북아현 2동
8	"	전 성 장	북아현 3동 1-1027	북아현 3동
9	"	김 대 봉	대현동 56-40	대신동
10	"	정 혜 연	연희 2동 196-1 연희궁APT 105호	연희 2동
11	"	한 한 열	연희 3동 304-2	연희 3동
12	"	최 태 중	홍제 1동 331 현대APT 103동 1303호	홍제 1동
13	"	이 문 복	홍제 2동 82 한양APT 109동 102호	홍제 2동
14	"	김 영 일	홍제 3동 260-43	홍제 3동
15	"	이 진 수	홍은 3동 190-15(1층)	홍은 4동
16	"	최 용 완	홍은 1동 453-2 풍림2차 102동 1203호	홍은 1동
17	"	최 광 전	홍은 2동 10-27	홍은 2동
18	"	조 재 구	홍은 3동 338-5	홍은 3동
19	"	정 일 출	남가좌 1동 152-39	남가좌 1동
20	"	우 유 근	남가좌 2동 376-3 현대APT 110-1206	남가좌 2동
21	"	허 준 구	북가좌 2동 3-143	북가좌 2동

## II. 직능·유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협의회, 단체 — 101개단체 106,320명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1	민원심의위원회	구 청 장	2	11	330-1470	감사담당관
2	공직자윤리위원회	정 현식	2	3	717-3443	"
3	서대문구 안전대책위원회	구 청 장	2	17	330-1324	"
4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9	330-1324	"
5	방위협의회	구 청 장	11	39	330-1310	총무과
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박 상동	58	149	324-3467	주민자치과
7	제2전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강 성모	6	34	330-1600	"
8	행정서사회 서대문구지부	이 남근	6	23	336-5300	"
9	인장업연합회 서대문지회	이 한현	6	58	362-3664	"
10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조 상길	5	5	336-7551	"
11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협의회	이 종복	11	471	392-3013	"
12	바르게살기 서대문구협의회	김 경오	13	537	736-1307	"
13	새마을금고 서대문구연합회	박 현철	3	18	312-0312	"
14	새마을문고 서대문구지부	임 해진	7	184	356-6668	"
15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이 길규	15	1,320	364-6660	"
16	정책자문위원회	구 청 장	1	17	330-1315	기획예산과
17	규제개혁위원회	안 용식	2	11	716-8761	"
18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구청장	1	13	330-1317	"
19	투자심사위원회	행정관리국장	1	7	330-1317	"
20	예산집행심의회	행정관리국장	1	5	330-1317	"
21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 청 장	2	10	330-1315	"
22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부구청장	2	9	330-1315	"
23	소송심의위원회	구 청 장	2	3	330-1315	"
24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부구청장	2	10	330-1317	"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25	서대문구체육회	구 청 장	9	32	330-1322	문화체육과
26	생활체육협의회	권 혁 래	13	8	394-8759	"
27	소식지편집위원회	부구청장	1	8	330-1410	"
28	서대문구축구연합회	권 혁 래	17	1,300	391-6501	"
29	서대문구광고심의위원회	부구청장	1	9	330-1410	"
30	자연사전시관건립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4	330-1412	"
31	교구협의회	조 용 선	15	40	374-2006	"
32	서대문구문인협회	이 상 보	19	121	3216-8774	"
33	형무소역사관운영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0	330-1626	"
34	문화체육회관운영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3	330-1560	"
35	당구협회서대문지회	박 상 권	9	215	372-4969	"
36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서대문지회	박 정 덕	6	127	372-6442	"
37	기록물폐기및정보공개심의회	행정관리국장	1	6	330-1436	민원봉사과
38	민원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행정관리국장	1	4	330-1436	"
39	재향군인회서대문지부	정 무 신	16	81,000	335-4379	"
40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무국장	2	10	330-1360	재무과
4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구청장	4	7	330-1345	세무1과
42	구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부구청장	5	11	330-1345	"
43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재무국장	4	9	330-1345	"
44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서대문지회	김 새 진	23	565	308-7968	지적과
45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구청장	2	13	330-1304	"
46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윤 인 성	2	6	330-1021	"
47	대한상이군경회 서대문지회	전 창 화	7	389	393-2952	사회복지과
48	대한전몰군경유족회서대문지회	신 우 식	6	285	393-2952	"
49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서대문구지사	최 혜 숙	5	320	393-2952	"
50	국민건강보험공단서대문구지사	이 우 선	1	79	323-0274	"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51	대한무공수훈자회서대문지회	고종갑	5	528	394-2146	사회복지과
52	서대문구노인회지회	전성장	5	4,300	363-1334	"
53	안산장학회	박춘화	15	55	392-3158	"
54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오성자	5	483	391-4809	"
55	여성단체연합회	윤선경		4,296	394-2794	"
56	서대문구 보육위원회	부구청장	2	20	330-1490	"
57	주부환경 서대문연합회	김태임	5	246	3217-5131	"
58	아동위원회	이종호	5	41	392-4137	"
59	보육시설연합회	정효정	4	17	734-6378	"
60	지방청소년위원회	부구청장	2	23	330-1304	"
61	한국음식업중앙회서대문지회	서용석	12	4,297	333-2341	환경위생과
62	대한제과협회 서부지회	장양기	6	180	391-0911	"
63	숙박업 서대문지회	유용종	16	171	322-7884	"
64	한국목욕중앙회서대문지회	오환인	8	76	389-1147	"
65	대한미용사회서대문지회	고정자	14	760	334-1859	"
66	한국이용사회서대문지회	한상문	29	213	322-7977	"
67	한국암작식용유서대문지회	이기로	10	65	391-5150	"
68	한국세탁업협회서대문지회	이양우	13	350	336-4439	"
69	환경보전협의회	정연규	5	48	361-2801	"
70	한국식품임가공협회서대문지회	유남식	4	89	388-3002	"
71	서울의제21실천단	박상기	6	76	363-2801	"
72	양공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1지부)	황교원	4	111	735-9784	지역경제과
73	양공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2지부)	오연진	4	135	373-2782	"
74	양공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3지부)	한기남	4	90	363-0435	"
75	한국난방시공협회서대문지회	강옥전	3	110	304-3383	"
76	축산기업 서대문구지부	공희순	20	159	396-1284	"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77	한국온돌난방시공협회서대문지회	김성기	2	200	305-8908	지역경제과
78	청소노동조합서대문지부	노기진	3	222	324-7685	청소행정과
79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14	330-1380	주택과
80	건축·주택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8	330-1380	"
81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2	9	330-1387	도시정비과
82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	3	16	330-1385	"
83	한국광고물사업협의회서울지부서대문지회	정수연	5	39	392-2309	"
84	보상심의위원회	구청장	2	18	330-1401	"
85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14	330-1390	건축과
86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구청장	2	13	330-1390	"
87	대한건축사협회서대문분회	권상운	8	35	333-6411	"
88	서대문구기술자문단	김상효		20	361-2804	토목하수과
89	도로관리심의회	부구청장	2	13	330-1304	"
90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7	330-1304	"
91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부구청장	2	10	330-1304	교통행정과
92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부구청장	2	6	330-1304	"
93	건설·교통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2	5	330-1309	"
94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8	330-1304	"
95	교통불편신고실무심의회	건설교통국장	1	10	330-1485	교통지도과
9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부구청장	3	13	330-1804	보건행정과
97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구청장	3	9	330-1821	보건지도과
98	서대문구의사회	김형국	7	171	935-0797	의약과
99	서대문구한의사회	김영선	3	77	394-5188	"
100	서대문구약사회	정명진	4	159	379-2109	"
101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최용철	4	114	373-6313	"

### III.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현황

#### 1. 서대문구의회 · 구청

##### 구 의 회

구 분	전화번호
의 장	364-5900
부 의 장	364-5901
사무국장	364-5905
전문위원	364-5903~4

구 분	전화번호
의 정	364-5902
의 사	364-5903
의 안	364-5904
F A X	364-5049

##### 서대문구청

관·과	일반전화	행정
구 청 장	324-5994	
	336-5878	
	330-1303	303
	330-1333	333
부 구 청 장	324-7742	
	330-1304	304
	330-1334	334
감사담당관	감 사	
	330-1470	470
	330-1471	471
	조 사	
	330-1472	472
	330-1473	473
	민 원 관 리	
	330-1566	566
	민방위 재난 관리	
	330-1324	324
	330-1325	325
	민방위 교육 훈련	
	330-1326	326
	330-1328	328
	(FAX)	
	330-1565	
	구정 기동 처리반	
	330-1414	414
	민 원 신 고	
	326-1061	
행 정 관 리 국 징	324-7455	
	330-1305	305
	330-1335	335

관·과	일반전화	행정
총무과	총 무	330-1310
		310
인사과	330-1311	311
친절대 외 협력과	인 사	330-1312
	친 절	330-1329
주민자치과	대 외 협력	330-1630
	(FAX)	630
동 행 정	330-1449	
	330-1313	313
자 치 운 영	330-1314	314
사 회 진 흥	330-1600	600
	330-1320	
기획예산과	330-1321	320
기획예산과	(FAX)	330-1413
기획예산과	기 획	330-1315
		315
기획예산과	330-1316	316
예 산	예 산	330-1317
		317
법 제	법 제	330-1318
		318
전 산	전 산	330-1319
		319
자료실	(FAX)	330-1442
자료실	전 산 실	330-1369
		369
자료실	330-1460	460
자료실	330-1439	439
자료실	330-1459	459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문화체육과	공보	330-1410	410	재무국장		330-1306	306
		330-1411	411			330-1336	336
	문화관광	330-1412	412	재산관리		330-1340	340
		330-1577	577			330-1341	341
	생활체육	330-1322	322	계약		330-1342	342
	(FAX)	330-1430				330-1343	343
	문화회관	391-9032		자치		330-1344	344
		330-1551	551			330-1553	553
		330-1560	560	용지		330-1399	399
		330-1561	561			330-1400	400
	(FAX)	391-9031				(FAX)	330-1429
민원봉사과	체육회관	395-8231~4		세무1	330-1345	345	
	문화의집	3217-0359			330-1346	346	
	서대문형무소	363-9750~1		세무2	330-1347	347	
		330-1626	626		330-1348	348	
		(FAX)	363-9752	세무3	330-1349	349	
	문서관리	330-1435	435		330-1554	554	
		330-1436	436		조사평가	330-1557	557
		330-1437	437		세무종합전산실	330-1547	
	민원처리	330-1421	421		(FAX)	330-1707	
		330-1422	422	정리	330-1350	350	
		330-1423	423		330-1351	351	
	1회민원	322-8282		과정1	330-1352	352	
	호적	330-1424	424		330-1353	353	
		330-1425	425	과정2	330-1354	354	
		330-1426	426		330-1575	575	
	(FAX)	330-1327	327		(FAX)	330-1579	
		330-1684		지정과	330-1450	450	
		330-1685			330-1451	451	
	전화민원	332-3001		토지관리	330-1452	452	
		333-3001					
		330-1301	301				
		330-1302	302				
		330-1114					
	현장민원실	330-1672					
		(FAX)	330-1673				

	관·과	일반전화	행정
지 적 과	지적 관리	330-1495	495
	지가 조사	330-1496	496
	건축 물 관리	330-1497	497
	지적 측량	330-1458	
	(FAX)	330-1498	
생활 복지국장		330-1307	307
		330-1337	337
사회 복 지 과	사회	330-1355	355
		330-1356	356
	복지	330-1357	357
		330-1358	358
	가정복지	330-1490	490
		330-1491	491
	부녀청소년	330-1492	492
		330-1493	493
	(FAX)	330-1619	
	식품 위생	330-1360	360
		330-1361	361
환경 위 생 과	공중 위생	330-1362	362
		330-1363	363
	위생 관리	330-1364	364
	환경 관리	330-1370	370
		330-1371	371
	생활 공해	330-1372	372
		330-1373	373
	(FAX)	330-1597	
	상공	334-0700	
		330-1365	365
지 역 경 제 과	유통 관리	330-1366	366
	연료	330-1367	367
	(FAX)	330-1368	368
	취업 정보 은행	330-1419	419
		330-1639	639
	공공근로추진반	330-1606	606
		330-1607	607
		330-1633	633
	(FAX)	330-1605	

	관·과	일반전화	행정
청 소 행 정 과	사무	333-6000	
		330-1375	375
	작업	330-1376	376
	재활용	330-1377	377
	장비 관리	330-1378	378
	폐기물 관리	330-1564	564
	(FAX)	330-1712	
	청소 차고	373-2773	468
도시 관리국장	재활용 센터	394-8272	
		330-1308	308
		330-1338	338
주택	주택	330-1380	380
		330-1381	381
	주택 관리	330-1382	382
	주택 정비	330-1383	383
	(FAX)	330-1634	
주택 개 량 과	대기실	330-1463	463
	개량 1	330-1384	384
		330-1455	455
	개량 2	330-1456	456
	주거 환경	330-1457	457
	(FAX)	330-1624	
	추진반	330-1587	587
도시 정비 과	도시 계획	330-1385	385
		330-1386	386
	광고물 관리	330-1387	387
	보상	330-1401	401
		330-1402	402
	가로정비	330-1446	446
	가로정비대기실	330-1573	573
	신촌초소	320-3864	
	광고물 대기실	330-1631	631
	(FAX)	330-1636	

관·과		일반전화	행정	실·관·과		일반전화	행정
건축과	건축 관리	330-1390	390	공원 녹지과	공익요원대기실	330-1394	394
		330-1391	391		녹지인부대기실	330-1622	622
	건축 1	330-1392	392		공원인부대기실	330-1572	572
	건축 2	330-1393	393		수경재배장	330-1576	576
	영선	330-1448	448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330-1481	481
	건축 민원실	330-1567	567			330-1482	482
		330-1568	568		교통시설	330-1483	483
	(FAX)	330-1440			자동차정비	330-1627	627
	건설교통국장	330-1309	309			330-1628	628
		330-1339	339		자동차등록	330-1444	444
토목하수과	토목	330-1405	405			330-1484	484
		330-1406	406		증기등록	330-1559	559
	도로관리	330-1407	407		(FAX)	330-1445	
		330-1562	562	교통지도과	주차관리	330-1485	485
	도로조명	330-1563	563			330-1486	486
	하수	330-1415	415		교통과정	330-1487	487
		330-1416	416			330-1617	617
	지하수	330-1417	417		운수지도	330-1618	618
		330-1418	418		(FAX)	330-1638	
	(FAX)	330-1615			주차단속원실	330-1432	432
		330-1547				330-1595	595
	토목기동반대기실	394-5965			버스전용차선	330-1582	582
	하수기동반대기실	330-1580	580		단속실	330-1589	589
공원녹지과	공원	330-1395	395	실			
		330-1396	396	시책추진반	제2청사추진	330-1586	586
	녹지	330-1397	397			330-1587	587
	조경	330-1433	433		여성구정	330-1600	600
	(FAX)	330-1750			평가추진	330-1601	601
	독립공원	330-1398	398		새주소부여	330-1608	608
					사업추진	330-1609	609
					(FAX)	330-1413	
				종합상황실		333-4599	
				(당직실)		337-2000	
						330-1300	300
						330-1330	330
						336-0425	

실·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실			보 건 소			
친절민원안내	330-1458	458	서대문경찰서	362-2345	465	
대회의실	330-1431	431	서부경찰서	359-4100	466	
지하상황실	330-1434	434	홍연파출소	334-0112	467	
공직자윤리위원회	330-1438	438	서부도로관리사업소	303-8461		
전화기계실	330-1331	331	은평수도사업소	730-3852		
	330-1332	332	의료보험서대문·은평지사	326-0658	571	
전기실	330-1374	374	서대문등기소	382-5651		
기관실	330-1474	474	서대문세무서	2287-4200		
등사실	330-1475	475	서대문세무서(별관)	2287-4615		
운전기사대기실	330-1477	477				
	330-1478	478				
위생원실	330-1359	359	소장	330-1803		
주차타워	330-1420	420		3142-9532		
청사정문	330-1593	593	보건행정과	보건기획	330-1804	
청사후문	330-1594	594			330-1805	
중대본부	330-1479	479		운영	330-1802	
증지판매	330-1409	409		방역	330-1806~7	
구내식당	330-1591	591		(FAX)	3142-9533	
	330-1592	592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330-1821	
청소노조지부	324-7685	464			330-1822	
구내약국	330-1488	488		가족보건	330-1823	
구내상업은행	324-1318	428		건강관리	330-1824	
여행사	3142-2500		의약과	의무	330-1841~2	
체력단련장	330-1598	598		약무	330-1843	
외부기관				검진	330-1844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330-1379	379		(FAX)	330-1854	
	324-5841					
민주평화통일협의회	330-1590	590	결핵관리실	330-1826		
	324-3467		예방접종실	330-1828		
검진실			검진실	330-1827		
영·유아실			영·유아실	330-1829		

보건소	일반전화	행정	동	일반전화	행정
모성실	330-1830		북이현제3동 (FAX 363-4916)	363-4913 ~5	511 512
방문간호실	330-1825		대신동 (FAX 363-7545)	363-7542 ~4	513 514
	330-1833		창천동 (FAX 363-5850)	363-5851 ~3	515 516
내과	330-1845		연희제1동 (FAX 322-1384)	322-1381 ~3	517 518
치과	330-1846		연희제2동 (FAX 322-3349)	322-3346 ~8	519 520
물리치료실	330-1848		연희제3동 (FAX 322-3124)	322-3121 ~3	521 522
임상병리실	330-1849		홍제제1동 (FAX 394-4544)	394-4541 ~3	523 524
	330-1853		홍제제2동 (FAX 733-2794)	733-2791 ~3	525 526
X선실	330-1851		홍제제3동 (FAX 394-3274)	394-3271 ~3	527 528
약국	330-1847		홍제제4동 (FAX 391-6573)	395-0201 ~3	529 530
민원실 (FAX)	330-1801~2		홍은제1동 (FAX 3216-4494)	3216-4491 ~3	531 532
	330-1811		홍은제2동 (FAX 396-4214)	396-4211 ~3	533 534
건강정보관리실	330-1817		홍은제3동 (FAX 396-4814)	396-4811 ~3	535 536
성·에이즈상담실	330-1813		남가좌제1동 (FAX 375-7504)	375-7501 ~3	537 538
스트레스상담실	330-1841		남가좌제2동 (FAX 375-6225)	375-6222 ~4	539 540
건강검진센터	330-1850		북가좌제1동 (FAX 374-7244)	374-7241 ~3	541 542
당직실	330-1810		북가좌제2동 (FAX 375-4184)	375-4181 ~3	
동	일반전화	행정			
총정로동 (FAX 363-2145)	363-2142 ~4	501 502			
천연동 (FAX 363-2536)	363-2533 ~5	503 504			
북이현제1동 (FAX 363-4254)	363-4251 ~3	507 508			
북이현제2동 (FAX 363-4276)	363-4273 ~5	509 510			

## 2.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본 청 : 국번없이 120번
  - └ 자치구 : 해당국번 + 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 원 내 용
국번없이 120	수 도 민 원
1번+#+→	교 통 민 원
2번+#+→	의 학 정 보 제 공
3번+#+→	행 정 법 규 상 담
4번+#+→	주 택 상 담
5번+#+→	관 광 안 내
6번+#+→	도 시 계 획 상 담
7번+#+→	지 방 법 률 상 담
8번+#+→	지 방 세 세 무 상 담
9번+#+→	건 축 상 담
10번+#+→	중 소 기 업 지 원 및 구 인 구 직 안 내
11번+#+→	사 정 안 내
12번+#+→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13번+#+→	생 활 관 련 신 고 및 고 발
14번+#+→	시 설 물 훠 손 신 고
15번+#+→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

## 3. 서울시 각 구청·구의회

구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구의회
종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435	731-0310	725-6982	723-6813~5
중구	2260-1303	2260-1114	2266-2000	2260-1301	2260-1310	2250-4401	2269-3103~7
용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422	710-3422	790-4381~6
성동	2290-7333	2290-7114	2290-7300	2290-7435	2290-7422	2290-7422	2299-1544~7
광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422	450-1422	2201-4384~5
동대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420	920-4420	2214-8040~5
중랑	490-3303	490-3114	490-3300	433-3001	490-3422	490-3422	3423-2091~4
성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301	941-2672	941-2672	927-8094~7
강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422	901-6422	901-6441~7
도봉	901-5333	903-3001	901-5300	901-5301	901-5422	901-5422	997-8813~8
노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301	950-3422	950-3422	950-3441~7
은평	389-2000	350-1399	389-2000	350-1301	350-1691	350-1691	350-1441~7
서대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2-3001	390-4411	390-4411	364-5900~4
마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422	330-2422	325-1987~8
양천	2650-3333	2650-3114	2650-3300	2645-3001	2650-3422	2650-3422	2652-7234~5
강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435	3664-6932	3664-6932	651-0920~2
구로	860-2333	860-2114	856-2000	853-3001	860-2266	860-2266	852-0272~4
금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422	890-2422	896-5765~7
영등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4-3001	630-0311	630-0311	670-3446~7
동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422	820-1422	823-6492~4
관악	888-0001	880-3114	874-2761	877-3001	874-2761	874-2761	880-0600~4
서초	570-6333	570-6462	588-2000	570-6301	570-6572	570-6572	570-6670~80
강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3451-2510	3451-2510	561-9947~9
송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434	410-3422	410-3422	2203-1811~4
강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2224-0710	2224-0710	2224-9001~2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 4. 타 구의회

구 청	의장실	사무국실장	의 정	의 사	의 안	FAX
종로	723-6813	723-6815	723-6819	723-6816	731-0445	723-7826
중구	2269-3103	2269-3104	2269-3105	2269-3106	2269-3107	2269-3108
용산	790-4381	790-4383	790-4384	790-4385	790-4386	790-4387
성동	2299-1547	2299-1544	2299-1546	2266-1543	2290-7447	2299-1549
광진	2201-4381	2201-4384	2201-4385	450-1446	450-1447	454-0438
동대문	2214-8040	2214-8042	2214-8043	2214-8044	2214-8045	2214-8048
중랑	3423-2091	3423-2093	3423-0672	3423-0673	3423-0674	438-6019
성북	927-8097	927-8098	927-8094	927-8095	927-8096	927-9308
강북	901-6441	901-6443	901-6446	901-6447	901-6768	908-8665
도봉	997-8813	997-8815	997-8816	997-8817	997-8818	997-88199
노원	950-3441	950-3443	950-3445	950-3446	950-3447	938-7988
은평	350-1441	350-1443	350-1445	350-1446	350-1447	350-1701
마포	325-3322	325-3321	325-1981	325-1982	325-1983	325-1989
양천	2652-4981	2652-4985	2652-7234	2652-7235	2652-7236	2652-7223
강서	651-0423	651-0422	654-0920	654-0921	652-0922	606-1816
구로	852-4672	852-0275	852-0272	852-0273	852-0274	852-4679
금천	896-5763	890-2441~8	890-2442	890-2443	896-5765	892-0249
영등포	670-3441	670-3443	670-3446	670-3447	670-3447	631-8145
동작	823-5922	824-5500	823-6492	823-6493	880-6494	817-3184
관악	880-0600	880-0604	880-0622	880-0625	880-0628	871-9695
서초	570-6670	570-6675	570-6677	570-6678	570-6679	570-6684
강남	561-7466	561-7469	561-9947	561-9948	561-9949	515-9555
송파	2203-3101	2203-1811	2203-1812	2203-1813	2203-1814	2203-3108
강동	2224-9001	2224-9090	2224-9072	2224-9074	2224-9078	475-4605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 5.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직 책	전화 번호	직 책	전화 번호
의장	723-6981~2	의사당 담당관	3702-1298
사무처장	3702-1236~7	공보실장	3702-1300~6
의정 담당관	3702-1245~6		

**시의원 명단**

선거구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제1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1,2,3동, 대신동, 창천동)	주세만	교통위원회	363-6050
제2선거구 (연희제1,2,3동, 홍제제1,2,4동)	이강옥	건설위원회	322-0678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2,3동)	김옥원	환경수자원위원회	395-8145
제4선거구 (남가좌제1,2동, 북가좌제1,2동)	신경식	재정경제위원회	372-2655

## 6. 기타 유관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서부지청

(마포구 공덕동 105-1)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생활침해사범신고	3273-3333	공 안 과 장 실	711-4382
지 청 장 실	706-1691	공 안 과	711-4383
차 장 검 사 실	706-1692	사 건 과 장 실	706-8656
형 사 제 1 부 장 실	706-1693	사 건 과	706-8657
형 사 제 2 부 장 실	706-1694	집 행 과 장 실	706-6740
형 사 제 3 부 장 실	706-1695	집 행 과	711-4381
사 무 국 장 실	706-8291	법 률 구 조 공 단	
서 무 과 장 실	706-8292	서 부 직 할 출 장 소	
수 사 과 장 실	711-4384	자 동 상 담 실	700-2080
1 호 수 사 관 실	711-4385	법 률 상 담 실	713-6009
2 호 수 사 관 실	711-4386	전 담 변 호 사 실	707-3749

## 서대문 경찰서

(미근동 16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62-2345	형 사 과	393-1683
경 무 과	362-3304	교 통 과	313-9395
민 원 실	362-4400	경 비 과	362-2546
민 원 실	362-7000	정 보 과	362-4450
방 범 과	362-6443	보 안 과	362-0113
방 범 순 철 대	312-2418	경 우 회	362-2368
수 사 과	362-2548	경 목 실	363-1313

## 서부 경찰서

(은평구 녹번동 177)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4100				
경	무	과	357-2527	정	보	과	387-0326
민	원	봉	사	보	안	과	384-0113
경	비	과	385-9191	경	목	실	355-8956
교	통	과	359-0663	방	법	순	찰
방	범	과	384-0672	대			386-5210
수	사	과	386-3766	청	소	년	육
형	사	과	386-0330	지도	상	성	회
				청	소	년	당
				연	소	당	실

## 파 출 소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정로파출소	충정로, 미근, 합동	362-3557	홍연파출소	연희3동	334-0112
독립문파출소	영천, 옥천동 냉천, 천연동 현저동	363-5316	홍은1파출소 홍은2파출소 홍서파출소 홍은3파출소	홍은1동 홍은2동 홍은3동 일부 홍은3동 일부	3216-9947 395-1775 303-9902 391-5568
북아현1파출소	북아현1동 북아현2동	362-1615	홍제파출소 안산파출소	홍제1동 홍제2, 4동	396-5247 735-8254
북아현파출소	북아현3동 대신동일부 신촌, 봉원동	362-3559 393-0113 363-0469	문화촌파출소 남가좌1파출소 남가좌2파출소 북가좌1파출소 북가좌2파출소	홍제3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일부	379-6737 373-4762 373-4113 372-5488 372-0520
대현파출소	창천동	392-2113	북가좌3파출소	북가좌2동일부	302-1443
연희파출소	연희1동	334-5169			
연궁파출소	연희2동	334-0113			

## 서대문 세무서

(본관 : 홍제동 251, 별관 : 은평구 응암동 84-5)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안 내 (당직실)	2287-4611~2	서 장	2287-4201~2
별관 안내 (당직실)	2287-4615	납세지원과	2287-4231~4
납세서비스센터		징세과	2287-4261~5
민원	2287-4251~5	세원관리1과	2287-4301~6
신고등록	2287-4241~9	세원관리2과	2287-4381~8
부동산양도창구	2287-4446	조사1과	2287-4501~8
	2287-4681	(별관)	
세무상담	2287-4221~3	조사2과	2287-4551~8
납세자보호상담관	2287-4211~4	(별관)	

## 서대문 등기소

(은평구 응암동 95-1)

안내	민원접수 (등·초본 발급안내)
382-5651	ARS 599-9999

## 은평수도사업소

(홍제 4동산1-17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소장실	730-3859	요금2과	722-0655~7
총무과	730-3852~3	공무1과	730-3854~6
민원상황실	730-3850	공무2과	730-3857~8
상황계 (FAX)	722-3602	양수기반	722-7136
요금1과	720-9262~3		

## 서부 교육정

(대현동 67-1)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교육장실	362-1090	관리국장	362-1201
학무국장	362-1095	관리과장	363-2751
초등교육과장	362-0544	서무계	363-2755
초등교육계	364-6613	문화수발실	313-4507
유아교육계	392-6586	관리계	362-1420
학사계	363-2752	기획감사계	362-1432
중등교육과장	364-6616	전산실	313-4908
중등교육계	362-0804	재무과장	362-7289
과학기술계	312-2701	경리계	363-2753
사회교육체육과장	362-9490	관재계	363-2754
사회교육행정계	362-1729	시설과	363-0170
사회교육지도계	364-8783	시설1계	364-8784
체육청소년계	362-7288	시설2계	364-8785
학교보건계	364-8782	F A X	364-6057~9
		교육상담실	362-5796
		당직	363-2751

## 서부 소방서

(은평구 녹번동 48-5)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장실	359-0119	북가좌파출소	372-0119
소방과	355-1119	(북가좌 333-9)	
방호과	357-8509	연희파출소	336-0119
구조·구급과	382-0119	(연희 81-10)	
F A X	382-1149	흥은파출소	379-0119
		(흥은2동 11-854)	

### 종로소방서

(종로구 수송동 146-2)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장실	733-0119	구조·구급과	725-3119
소방과	723-2124	서대문파출소	312-2119
방호과	722-0120	(미근 165)	

### 우체국

우체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대문우체국	창천동 98-3	324-0014
충정로우체국	충정로 2가 8-2	362-0014
신촌우체국	대현동 90-101	362-0205
홍제동우체국	홍제1동 158-45	379-3790
모래내우체국	북가좌2동 424-29	373-2005
연희동우체국	연희2동 90-15	333-6004
연대우체국	신촌동 134	392-0205
이대우체국	대현동 11-1	312-0500
명지대우체국	남가좌동 50-3	373-0182
경찰청우체국	미근동 209	393-2001
홍제3동우편취급소	홍제3동 278-10	391-8910
홍은3동우편취급소	홍은3동 275-28	395-2749
홍남우편취급소	남가좌2동 338-39	307-2005
독립문우편취급소	현저동 52-3	312-0225
홍은미성우편물취급소	홍은3동 189-33	3216-6161
미근동우편물취급소	미근동 94-1	365-0315

## 전화국

전화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광화문전화국	홍제동 전지역	국번 + 0000
불광전화국	홍은, 남가좌, 북가좌지역	국번 + 0000
신촌전화국	기타지역	국번 + 0000

## 의료보험조합

(연희동 134-5)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대표이사	338-1307	정수여	3141-2752~4
관리과	3141-4386~9	급여과	3141-4386~9
총무과	326-0658		

## 초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미동초등학교	미근동 36	1896	364-6524
경기초등학교	충정로2가 70	1965	336-2908
금화초등학교	천연동 13	1924	364-9275
대신초등학교	대현동 67-1	1965	363-1564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신동 20	1955	312-5227
대학부속초등학교			
창북성초등학교	창천동 53-1	1961	332-9531
주연고등학교	북아현 2동 215	1941	362-0669
연희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65	312-7701
안산고등학교	연희3동 88-1	1968	336-4597
홍인고등학교	홍제1동 320	1971	395-6034
홍안고등학교	홍제2동 산 44	1962	735-3069
홍인고등학교	홍제3동 286-5	1974	391-2196
홍안고등학교	홍제3동 245-1	1962	391-5972
홍인고등학교	홍은1동 산 48	1937	3216-3354
홍연고등학교	홍은3동 305	1975	379-6528
연명고등학교	남가좌2동 224-228	1973	309-0587
연명고등학교	남가좌2동 50-3	1967	309-1839
복가좌초등학교	북가좌1동 376-17	1969	372-4042

## 중·고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인창중·고등학교	충정로 2가 69	1922	363-3393
동명여자중학교	천연동 31-1	1921	363-5042
금란여자중·고등학교	대신동 113	1960	392-4368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대신동 47	1955	392-2062
한성중·고등학교	북아현 1동 170-1	1928	363-4943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40	393-5128
서연중학교	연희1동 산 267-1	1985	332-7376
서울외국인학교	연희3동 55-1	1958	334-3660
신연중학교	연희3동 산 2-6	1987	379-9233
연북중학교	연희3동 산 141	1985	332-7377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연희3동 89-1	1968	324-0664
홍은중학교	연희3동 186-3	1984	3216-0512
정원여자중학교	홍은3동 산 11-97	1969	379-4310
명지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48	305-5953
명지여자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69	303-9230
연희여자중학교	남가좌2동 368-1	1975	372-2992
한성과학고등학교	현저동 산5	1992	365-2851

## 대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경기대학교	충정로 2가 71	1957	390-5114
감리교신학대학	냉천동 31	1895	361-9114
연세대학교	신촌동 134	1885	361-2114
이화여자대학교	대현동 11-1	1886	360-2114
서울간호전문대학	홍제3동 287-89	1954	395-8012
명지대학교	남가좌2동 50-3	1970	300-1700
명지실업전문대학	남가좌2동 50-3	1974	300-1000
추계예술학교	북아현3동 190-1	1974	362-4513

**지 하 철**

역명	전화번호	역명	전화번호
신촌역	334-7001	홍제역	391-0517
이대역	313-9713	무악재역	736-0518
아현역	313-9712	독립문역	733-7457
충정로역 (2호선)	313-9711	서대문역	392-5927
충정로역 (5호선)	362-2866	서울시지하철공사	520-5114

**기 차 역**

역명	전화번호	역명	전화번호
신촌역	363-7788	가좌역	373-1280

**관내소재 기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경찰청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363-0112 3708-252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종합사회복지관	363-9750-1 375-5040
프랑스대사관	312-3272	금화터널관리사무소	363-6866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90-7302	동아일보	334-3689

**서대문도서관**

(연희동 산2-11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관서장무서	396-3156 396-3157 396-3158	열관외F	람대A	출과X	396-3159 379-8619 391-6172